

#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정미·양기진



비교법제 연구 13-20-⑤

#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 정 미 · 양 기 진

# 약탈적 대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연구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Han, Joung-Mee

양기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ang, Gi-Jin

2013. 7. 12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약탈적 대출은 차입자의 교섭력의 결여라는 지위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사용한 것에서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의 적용, 대출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이 전가되는 현상이 문제의 핵심에 해당
- 약탈적 대출에 대하여 영국, 호주, EU 등에서 차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책임 있는 대출(responsible lending)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EU, 영국,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EU의 약탈적 대출 규제

- EU의 ‘Consumer Credit Directive(CCD)’의 경우 소비자 신용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설명의무의 이행은 올바른 신용대출시장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음
- CCD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계약에 따르는 각종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용조건 및 비용, 본인의 의무, 상품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연리(APR)를 계산하여 제공하도록 함

#### □ 영국의 약탈적 대출 규제

- 영국에서는 EU의 CCD를 반영하기 위하여 ‘Consumer Credit (Total Charge for Credit) Regulations 2010 (Statutory Instruments 2010 No.1011)’을 마련·시행하였고, 2012년 이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정부가 제안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S.I. 2012 No. 1745)
- 영국 ‘소비자여신법(Consumer Credit Act)’은 여신업자(creditor)에 대하여 차입자와 여신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차입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설명(adequate explanation)을 제공하도록 함
-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의 평가는 특정 여신약정이나 특정한 부가 여신약정을, 해당 차입자에게 재무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도록 함이 없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수할 차입자의 능력을 여신업자가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차입자 중심 테스트’라고 제시함

- 영국 공정거래청이 제시하는 차입자 중심 테스트의 핵심 문구는 ‘차입자가 그 여신계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차입자가 부당한 어려움 없이 상환할 수 있는가’를 말함

#### □ 호주의 약탈적 대출 규제

- 호주는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2009년에 제정하여 책임 있는 대출행위(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구현함
-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Regulatory Guide 209(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작성하여 여신업자 및 여신신청자(차입자) 등에게 제공함
-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에 의하여, 여신계약의 ‘체결’,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각각 해당 계약이 차입자에게 부적합한지를 판단함
- 대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i) 해당 정보가 소비자의 재무상황, 필요 또는 목적 등에 관한 것이고, (ii) 예비평가/본평가 시점에 해당 피면허자가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거나 해당 피면허자가 그 피면허자가 조사·평가를 수행하였더라면 그 정보가 진실임을 믿을 이유가 있었을 정보를 말함

#### □ 시사점

- EU, 영국, 호주의 입법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약체결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이용

하려고 하는 상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재정상황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라는 것, 금융이용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상환가능 한 범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대출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것

- 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과잉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환능력심사와 함께 차입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환능력 판단에 관한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신 등을 제공한 여신업자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여신업자 등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민사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Ⅲ. 기대효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약탈적 대출 관련 국내입법의 개정자료로 활용

□ 현재 계류되어 있는 약탈적 대출 관련 제·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에 기여

▶ 주제어 : 약탈적 대출, 금융소비자, 대출규제, 금융이용자, 소비자여  
신, 대출적정성, 무책임한 대출, 금융소비자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Need for regulation of predatory lending

- The crux of the problem with predatory lending is not due to the lack of bargaining power of the borrower nor by the lender taking advantage of their status differences to make unfair trading conditions but rather with financiers' protection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effect of the principle of compliance, loan review, and loans made without properly applying the assessment of credit rating agencies reports.
- For protection against predatory lending, in UK, Australia, EU, etc, they made legal system to fortify the borrower's responsibility in order for the borrower to make a responsible loan (responsible lending).

### Purpose of research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in EU, UK, and Australia's lending regulatory legislation information and with the goal of providing and improving domestic lending regulatory legislation.

## II.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 EU's Predatory Lending Regulation

- EU's 'Consumer Credit Directive (CCD)' is more focused on consumer credit and includes the specific criteria for approval.
- In EU,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and duty to explain is to emphasize the basic fundamentals in realization of the credit market.
- Through CCD, consumers are able to contract carefully and follow the various facts, and before entering into a credit agreement, credit terms, costs, obligation, and allows to consider the transparency of the product.
- In particular, to allow you to compare the various conditions, must provide the annual interest (APR) calculated in the same method.

### UK's predatory loan regulation

- In UK, to reflect the EU's 'Consumer Credit (Total Charge for Credit) Regulations 2010 (Statutory Instruments 2010 No.1011)' were prepared, and in 2012, the government proposed some amendments and in January 2013 the amendment was enforced (S.I. 2012 No. 1745)
- UK Consumer Credit Act (Consumer Credit Act; Consumer Credit Act) before the creditor and the borrower enter into loan agreement,

creditor has the duty to provide adequate explanation to the borrower.

Australia's predatory loan regulation

- Australia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in 2009 to implement the responsible lending conduct.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Chapter 3,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created the Regulatory Guide 209 (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 to provide a loan agent and loan applicant.

### **III. Legal Improvements**

- In EU, UK, and Australia's legislation, the most emphasizes, before signing contract, creditor mus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can identify the product themselves, to explain fully so the consumer can review whether they meet the financial situation, to determine financial user's credit worthiness and ensure the loan in the range that one is able to repay the loan.
- In order to maintain the adequacy of the loan, it is necessary and required to regulate excessive lending.
-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loan is an excess lo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rigorously the ability to repay the loan and introduce loan deal regulations.

- To effectively force the screening process of the borrower's ability to repay the loan, guidelines containing specific screening process, information, and procedures are necessary.
- Strict penalties are required for lenders for not properly determining the consumer's ability to repay the loan and approving the loan.
- If the examination to repay the loan is not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the responsibility for the loan can be converted to the lender for the adequate audit that was performed,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ivil remedies that can work in favor of the financial users.

➤ **Key word : Predatory Lending,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onsumer Credit, Financial Users, Consumer Credit Directive, Irresponsible Lending, Financial Consumer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제 2 장 약탈적 대출 개관 .....	21
제 1 절 약탈적 대출의 개념 .....	21
제 2 절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	24
I. 약탈적 대출 현황 .....	24
II.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	27
III. 약탈적 대출의 문제점 .....	27
제 3 장 EU의 약탈적 대출규제 .....	31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	31
제 2 절 EU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	32
I. 서 설 .....	32
II. 적용범위 .....	32
III. 정보제공 의무 .....	34
III.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	41
IV. 대출의 적정성 판단 .....	42

V. 지급불이행 처리 개선 .....	49
제 4 장 영국의 약탈적 대출규제 .....	53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개관 .....	53
I. 서 설 .....	53
II. 적용범위 .....	53
제 2 절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검토 .....	54
I. 정보제공 의무 .....	54
II.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	59
III. 대출의 적합성 판단 .....	63
제 5 장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	71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	71
I. 서 설 .....	71
II. 적용범위 .....	72
제 2 절 호주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	73
I. 정보제공 의무 .....	73
II. 대출의 적합성 판단 .....	76
제 6 장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쟁점별 비교 .....	107
제 1 절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의 구체화 .....	107
I. EU의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 .....	107
II. 영국의 설명의무 이행 및 정보제공의무 .....	108
III. 호주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	111
IV. 소 결 .....	113

제 2 절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15
I. EU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15
II. 영국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16
III. 호주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18
IV. 소 결 .....	126
제 7 장 결 론 .....	131
참 고 문 헌 .....	13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저소득, 고령층 채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나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sup> 특히, 금융지식에 관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층, 노년층,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관련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약탈적 대출의 규제필요성이 주목을 받아왔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계의 건전성은 하락하고 있는 점<sup>2)</sup>에서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약탈적 대출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sup>3)</sup>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 과다대출행위 또는 여신카드에 기한 현금서비스 과다대출행위 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과다대출행위는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은 법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다대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약탈적 대출에 대하여 영국, 호주, EU 등에서 차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책

1) 국회 정무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3. 2, 45면 참조.

2) 최근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7~10등급)들이 점차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비중이 각각 65.5% 및 5.5%로 2010년말에 비해 각각 0.8%,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 4, 26면.

3) 약탈적 대출 피해자는 약 182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2년 10월 국감자료 참조.



임 있는 대출(responsible lending)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의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sup>4)</sup> 및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등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쟁점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입법 지원 및 입법례 제공을 위하여 최근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입법례로 EU, 영국,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5)</sup>

본 연구는 EU, 영국,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의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대출에 관하여 크게 범위를 구분하면 담보대출과 순수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약탈적 대출에 관하여 이들 양자에 모두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순수신용대출 분야 중 소비자 신용에 관한 대출로 한정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

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의안번호 3254, 발의일 2012.1.8)은 현행법과 달리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미국에도 관련 입법례가 있으나, 미국은 약탈적 대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소비자 신용이란 생산자신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판매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해서 신용을 제공해 주고 장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sup>6)</sup> 여기에는 대부신용, 할부매매, 재화나 용역을 신용으로 제공하는 판매신용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EU, 영국, 호주의 경우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탈적 대출 개념에 포함되는 두 가지 분야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검토·분석한다. 소비자 신용에 관한 대출에 관해서도 비교법적 검토로 의의가 있는 검토 항목을 보면, 규율대상인 (소비자)여신의 범주, 여신업자등의 적합성 여부의 심사의무와 그 기준, 여신업자 등의 설명의무, 차입자(소비자)의 철회권 보장, 사후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가능 여부 등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들 기준을 주된 검토내용으로 한다.

조사대상인 EU, 영국, 호주의 연구범위를 보면, EU의 ‘Consumer Credit Directive(CCD)’의 경우 소비자 신용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 구성에 적합한 조사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호주는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2009년에 제정하여 책임 있는 대출행위(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구현하려 하고 있고,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Regulatory Guide 209(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작성하여 여신업자 및 여신신청자(차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

6) 이기중,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665면 ; 전광백,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8면.

으로 판단하였다. 영국에서는 EU의 CCD를 반영하기 위하여 ‘Consumer Credit(Total Charge for Credit) Regulations 2010 (Statutory Instruments 2010 No.1011)’을 마련·시행하였고, 2012년 이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정부가 제안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S.I. 2012 No. 1745)한 바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외부공동연구자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전체 보고서 기획 및 체계전반에 관한 부분, 우리나라의 약탈적 대출 관련 입법현황과 EU의 약탈적 대출관련 입법례 조사·분석에 관해서는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가 수행하였고, 호주와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입법례 조사·분석에 관해서는 양기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수행하였으며, 각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외에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계와 실무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sup>7)</sup>

---

7)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EU의 약탈적 대출규제의 배경과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 “EU의 소비자 신용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김희철(원광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약탈적 대출에 관한 법적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김효연(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가 있었고, 김상규(한양대학교 교수), 노철우(세명대학교 교수), 동학림(IBK 경제연구소 본부장), 박희주(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민경(중소기업중앙회 재정금융부 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 제 2 장 약탈적 대출 개관

### 제 1 절 약탈적 대출의 개념

대출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하여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는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그리고 변제가 용이하지 않은 규모의 대출을 받게 되는 상태를 ‘과잉대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최근에는 ‘과잉대출’에 그치지 않고, ‘약탈적 대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이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다대출행위”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몇 가지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견해를 볼 수 있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sup>9)</sup> 이 견해에 따르면 약탈적 대출은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 할지라도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약탈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새로운 종류의 약탈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sup>10)</sup>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둘째, ①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대출조건 설정(담보주택의 시장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 상당기간 동안 매월 상환액이 이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대출잔고가 증가하는 대출,

---

8) 김효연, “우리나라 약탈적 대출에 관한 법적문제와 대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5. 6, 55면.

9) 홍종학, 약탈적 대출에 대한 소고,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5, 봄. 239-240면.

10) 홍종학, 위의 논문, 240면.

과도한 담보설정비용 및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과도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② 차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영업행위 구사(대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대출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일시상환 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차입자가 보다 저렴한 대출처를 찾은 것을 방해하는 행위), 공박 또는 취약계층을 목표로 삼는 전략(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인종, 민족,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선별·판매하는 전략 구사)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1)</sup>

셋째,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2)</sup> 차입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으로 사기, 강박, 허위표시, 부당간섭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sup>13)</sup>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출실행 비용, 대출상환 구조, 대출기간 중 사정변경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표-1> 약탈적 대출 판단 기준

시 점	약탈적 대출 여부	판단기준
대출실행 비용	대출을 실행함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구조 · 차입자 부담 수수료가 적정한가	대출계약 체결 시

11) 박창균,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주택금융월보 통권 제75호, 2010. 참조.

12) 최승재, “구조화 금융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전개에 대한 연구 : 약탈적 대출 행위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상장협연구, 2008. 10, 162면.

13) 심영, “대출자책임-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 2003, 327면.

시 점	약탈적 대출 여부	판단기준
대출 상환 구조	대출의 종류, 대출자금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원리금 상환구조가 변제기간 동안 차입자가 완전 상각할 수 있는지, 차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등 구조면에서 적정한가	대출금액과 대출원리금 상환구조를 객관적으로 판단
대출기간 중 사정변경	차입자가 대출기간 중 경제사정이 변동되거나, 개인적인 변제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	사정 변경 시점

자료 : 김효연, 앞의 자료집, 57면.

이와 같은 논의 외에도 ‘약탈’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탈은 형사상의 용어로 사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104조의 규정과 같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따른 현저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약탈이 비록 「민법」 제 104조 규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탈적인 계약의 내용이 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에 속한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약탈적 대출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는 데에 OECD G20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에서는 “기만과 오용으로부터 소비자 자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의 내용에 “기만과 오용으로부터 소비자 금융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보호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야 해야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5)</sup>

14) 김상규,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자료집, 3면.

15) OECD,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aris, 2011. 참조.

이와 같이 약탈적 대출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개념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경우 주로 모기지론에 대한 규제차원에서 약탈적 대출이 논의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책임대출 책임차입 개념을 약탈적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것을 약탈적 대출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약탈적 대출의 개념에 대하여 단순한 과잉대출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① 금융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적합성 판단 없이), ② 대출에 대한 수수료·이자율 등 금융이용자가 대출계약 이전에 고려해야할 중요 정보의 제공과 설명 없이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고 검토한다.

## 제 2 절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 I. 약탈적 대출 현황

#### 1. 가계부채의 증가

사회적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문제점(하우스 푸어, 갭통 주택, 가계채무의 증가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지난 2001년 말 341조7천억 원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922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부문(가계+비영리법인) 부채는 2012년 6월 말 현재 1,121조4천억 원이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0년 158%에서 2011년 163.7%로 악화되었다.<sup>16)</sup>

16) 국회 정부위원회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택담

이러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1%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표-2>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8년 증가	'09년 증가	'10년 증가	'11년 증가	'12.12.31 잔액
국내은행 (일반+특수)	가계대출	24.9	20.9	22.0	24.4	467.3
	(주택담보대출)	(18.0)	(24.5)	(20.3)	(21.6)	(316.9)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6.3	13.6	21.8	21.7	192.6
	(주택담보대출)	(9.4)	(8.6)	(8.5)	(10.0)	(85.4)
계	가계대출	41.2	34.5	43.8	46.1	659.9
	(주택담보대출)	(27.4)	(33.1)	(28.8)	(31.6)	(402.3)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보험은 제외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4, 9면.

## 2. 카드 리볼빙 등 신용대출 이용 증가

2013년 3월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으로 대형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리볼빙<sup>18)</sup> 등 신용대출 전 부문에서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4, 3-4면.

17)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2012. 12. 13. 참조.

18)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약정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 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19) <http://mbceconomy.com/detail.php?number=3689&thread=26r06>(2013. 3. 10. 보도자료)



2012년 6월 말 리볼빙(전업사+겸영) 연체율은 3.50%로 2011년 말 (3.35%) 대비 0.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sup>20)</sup> 이는 고금리 이용자 비율이 높고, 대출성 리볼빙으로 카드사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 리볼빙 연체율 추이

(단위: 억원, %, %p)

구 분	'09말	'10말	'11년				'12년		
			3말	6말	9말	12말 (A)	3말	6말 (B)	증감 (B-A)
리볼빙 연체채권	1,739	1,601	1,677	1,702	1,967	2,043	2,140	2,114	71
리볼빙 자산	50,713	54,664	55,387	57,823	59,866	61,059	60,397	60,358	△ 701
연체율	3.43	2.93	3.02	2.94	3.28	3.35	3.54	3.50	0.15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10. 4. 보도자료 참조.

### 3. 다중채무자 부채 상승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의 한도대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sup>21)</sup> 최근 다중채무자의 부채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의 금액과 다중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고령층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sup>22)</sup>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2010년 말 3.3%이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2년 말 4.6%로 1.3% 상승하였다.<sup>23)</sup>

20) 금융감독원, 2012. 10. 4. 보도자료 참조.

21)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률용어는 아니다.

22)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28면.

23) 한국은행, 앞의 보고서, 29면.

이와 같은 현상은 다중채무자가 대부업체의 대출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 증가는 약탈적 대출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우리나라는 현재 대출과 관련한 여러 불공정행위들을 규제하는 일반법은 없으며, 대부업에 관한 감독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해당분야의 감독법에서 각각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대출 관련 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을 통해 각 업권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약탈적 대출 규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법을 중심으로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거론할 수 있으나, 이들 법령은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거래의 공정성을 규율하거나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으로서 대출거래의 불공정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각 개별 금융관련 법률에 관련 내용들이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다.

## III. 약탈적 대출의 문제점

약탈적 대출의 여러 가지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약탈적 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출금융기관이 ‘과잉대출’로 수익을 보는 구조(금융기관이 부실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는 구조)이면서 차입자는 ‘과잉대출’로 인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면서도 그 대출을 실행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담이 완화되지 않거나, 대출기간 도중에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약탈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금융회사의 직접대출<sup>24)</sup>이 일반적이고,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과 같이 고비용대출을 규제대상으로 사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sup>25)</sup> 특히, 국내에서는 약탈적 대출의 문제가 제2금융권 또는 제도권 밖의 신용대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규제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관련 문제나 대출모집인 관련 문제들, 대부업 이용자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선할인제(세이브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도 세이브 포인트를 사용해서 선할인을 받게 되면 카드판매를 늘리면서도 카드포인트의 적립률이나, 할부 수수료,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더 추가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카드를 일정량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과도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sup>26)</sup> 또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입자의 대출조건 변경 요구권

24) 미국의 경우 중개인을 통한 대출이 일반적이고, 차입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대출기관 및 중개인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임

25) 국회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 4, 14면 참조.

26) 김효연, “우리나라 약탈적 대출에 관한 법적문제와 대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5. 6, 61면.

한을 부여하여 차입자가 변제능력이 약화되는 경우 채무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문제를 보면, 업권별 모범규준(“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관련서류 전달 등을 수행(개인 대출상담사, 대출모집 법인)하는 자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22,05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할부금융, 은행, 저축은행, 보험분야에서 고루 활동을 하고 있는데,<sup>27)</sup> 이와 같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로 대출의 적정성 판단이나 과잉대출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27) 대출모집인은 할부금융(8,055명), 은행(5,953명), 저축은행(4,429명), 보험(3,6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52.8조원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의 실적을 나타내고, 수수료는 평균 1.28%로 알려져 있다. 신용대출(4%대)이 담보대출(0.4%대) 보다 높으며, 저축은행(7%대)과 할부금융(5%대)이 은행(0.5%대) 및 보험(0.4%대)에 비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9, 17면 참조.

## 제 3 장 EU의 약탈적 대출규제

###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계기로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의 제·개정도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금융기관에 바젤Ⅲ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무절제한 대출과 과도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의 도입은 은행권의 지나친 자율이 금융시장의 붕괴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또한, EU에서는 금융위기 중 문제가 됐던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등의 주택시장 거품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한 모기지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책임대출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1986년에 최초로 합의된 「Council Directive 87/102/EEC on Consumer Credit(이하 ‘소비자여신지침’ 또는 ‘CCD’라 함)」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이 지침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신용대출시장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금융시장의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 지침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회원국 법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으나, EU차원의 대책이 추진된 것은 1996

28)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자율’이라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년부터이다.<sup>29)</sup> 그러나 EU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우선된다는 특징 때문에 지침에서는 최소한의 합의사항만 담고 각 회원국은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국내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각 회원국의 여신계약에 대한 법률의 규정과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EU 소비자 신용시장의 통합에 문제가 생겼으며, 통일된 지침 적용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제 2 절 EU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 I. 서 설

EU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여신지침’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한다. ‘소비자여신지침’은 EU내의 모든 신용대출소비자가 동등하게 높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신용대출시장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sup>30)</sup> 또한, ‘소비자여신지침’의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국이 상이한 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제22조)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sup>31)</sup> 이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EU 전체적인 소비자신용 규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적용범위

‘소비자여신지침’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본 지침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본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범위나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한다.<sup>32)</sup> 또한,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을 소

29) 이기종, 앞의 논문, 670면.

30) 김희철, “EU의 대출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5. 6, 41면.

31) Directive 2008/48/EC, Preamble, paragraph 9.

32) EUROPEAN COMMISSION, HEALTH &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비자금용(consumer finance, 현금대출의 개념을 포함) 또는 판매신용(sales credit)<sup>33)</sup>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는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금전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sup>34)</sup>

‘소비자여신지침’은 2011년 이전에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이 예외규정이 폐지되어 부동산담보대출 분야에 있어서도 소비자신용보호 관련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EU에서는 이와 같이 예외규정을 폐지한 이유에 대하여 “소비자 여신” 시장과 “부동산 여신” 및 “담보저당 여신” 시장의 차이는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고정 또는 변동 금리나 1회 또는 수회 분납 옵션, 정기 또는 계약 종료 시 상환,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신용한도 개설, 저당권 등기, 보증 등과 같이 이용되는 금융 기법은 사실상 동일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sup>35)</sup>

최근에는 소비재 구입 자금 조달 분야의 모든 여신 유형에 적용되는 저당 기법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영국의 “역모기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소비자 요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택을 담보물건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당은 다수 회원국에서 일체의 신용 부채와 분리되고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2차 의무로 저당권 등기가 수반되는 여신 역시 대부분 소비자 신용 차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여신”과 “저당 여신”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sup>36)</sup>

---

GENERAL, Discussion paper for the amendment of Directive 87/102/EEC concerning consumer credit, p.6.([http://ec.europa.eu/consumers/cons\\_int/fina\\_serv/cons\\_directive/cons\\_cred1a\\_en.pdf](http://ec.europa.eu/consumers/cons_int/fina_serv/cons_directive/cons_cred1a_en.pdf))

33) 대금지급유예처럼 재화나 용역을 매개로 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34) 김희철, 위의 자료집, 41면.

35) EUROPEAN COMMISSION, p.6.

36) EUROPEAN COMMISSION, p.7.

또한, 소비자신용에 관하여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던 적용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200유로~75,000유로 사이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여신지침’은 고용계약이나 무이자 및 무비용 또는 위에 제시한 금액 이하의 적은비용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의 신용공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37)</sup>

### Ⅲ. 정보제공 의무

#### 1. 정보불균형 해소의 필요성

‘소비자여신지침’ 전문 19에서는 “소비자는 제반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용 조건 및 비용과 본인의 의무에 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수취해야 한다. 상품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는 특히 공동체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신용에 적용되는 연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여신지침’은 이와 같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고 EU 역내 단일 소비자 신용시장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신용비용의 제반 요소와 APR 계산법 등을 EU 전체에서 균일하게 정하고 적용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개선

신용 공여기관에 대한 정보 개선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개선에 부합한다. 여신 조건에 대한 투명성은 타 회원국의 상품을 비롯하여 시판 상품의 비교가능성 개선에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진정한 공급의 자유로운 순환을 위한 전제조건이다.<sup>38)</sup>

---

37) 김희철, 위의 자료집, 45면.

38) EUROPEAN COMMISSION, p.11.



따라서 ‘소비자여신지침’은 모든 여신 계약에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지침이 채택된 이후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여신 형태를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법은 여신계약의 분류체계에 우선하며, 이에 따라 사용 기법의 함수로 소비자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금리, 상환제도, 인출제도, 분할상환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리는 적어도 금리 계산 방식이나 적용 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조건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환 제도는 소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분납금을 납부하고 기간이 종료될 때 현금이나 현물로 대규모 총액을 납부하여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인출제도는 소비자가 1회나 수 회 제공되는 총액을 교대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정리 요건 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사항이고, 분할상환표는 금리나 요금이 고정되고 사전에 계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sup>39)</sup>

### 3.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소비자를 제외한 보증인 개인은 현재 지침 ‘소비자여신지침’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sup>40)</sup>

그러나 지침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계약에 부속되는 보증서와 이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 지침은 상업이나 직업 활동을 벗어난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목적을 대행하고 본 지침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계약에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를 포함해야 하고, 창업

---

39) *Id.* p.13.

40) *Id.* p.13.

사업가의 부모와 같은 본 보증인은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용어의 의미에서 소비자 여신계약이라면 이들이 수취하였을 정보와 동일한 정보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에서 보증인은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동산 담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주요 채무자의 여신계약과 불이행 존속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증약관은 특히 여신계약의 원금 총액에만 관련될 수 있는 “보증액”과 기타 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연체 금리를 나타내는 최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가 초래한 불이행 비용을 보증인이 지불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불이행을 확인하기 전에 보증인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41)</sup>

#### 4. 신용 공여기관에 대한 정보 개선

여신비용은 대부기관의 위험 함수로, 이러한 위험 자체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결정할 때 대부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의 질이 갖는 함수이다. 이에 따라 대부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신용시장, 특히 소비자 신용의 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양질의 정보가 갖는 중요성은 타 회원국에 설립되는 소비자에게 여신을 제공할 경우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신용 공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의 개선은 역내 소비자 여신시장의 구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이 같은 조건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타 회원국에서 여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소비자에 관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역외 여신의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과

---

41) EUROPEAN COMMISSION, p.14.

도한 부채 위험에 노출되는 소비자는 승인되지 않는 확실성을 보존하는 안정된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투명한 기록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채납을 기록하는 부정적 기록 또는 소비자 신용 약정 일체를 기록하는 긍정적 기록은 전체 회원국에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은 사적이거나 공적이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긍정적 통합 기록은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에 존재한다. 벨기에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벨기에와 독일 양국의 협정과 같이 이러한 통합 기록 기관의 교류 협정도 존재한다.

특정 회원국은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의 지급능력을 평가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대부기관에 부여하였다. 이 의무는 소비자와 해당 보증인의 지급능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정보를 체계화한다면 선거인 명부의 사용이나 불완전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과 같이 안전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대부기관이 사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 의무

CCD 제2장은 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본 장은 광고 단계(제4조)와 계약 이전 단계(제5조 내지 제7조)의 정보에 대한 요건도 포함한다. 본 장의 목적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신용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1) 총신용액 표시에 관한 사항

우선 CCD 제3조(1)에서 정하는 총신용액은 어떤 경우에도 실제 금액이나 대표 정보로 명시해야 한다.<sup>42)</sup> 제3조(1)에 따라 총신용액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총신용액은 신용과 관련된 비용 결제에 소요되는 금액(예, 행정 비용)은 배제한다.

다음으로 개방형 여신계약은 계약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여신계약이 개방형(또는 고정 계약 기한이 없다는)이라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sup>43)</sup>

(2)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특징

광고에서 대표 사례로 예시되는 제4조(2)의 표준 정보는 명확하고 간명하며 눈에 띄게 제시되어야 하고, 다른 정보 속에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즉, 광고의 다른 텍스트에 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표준정보의 텍스트가 너무 작거나 읽기 어렵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표 사례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표준 정보는 광고에서 쉽게 눈에 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가 대표사례이기 때문에 광고의 다른 정보와 혼동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sup>44)</sup>

---

42) 예를 들어, 채권자는 5,000유로를 제공하지만 100유로(또는 비용 요소를 택일하여)는 소비자의 기타 재원이 아니라 이러한 총액에서 조달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5,000 - 100 = \text{EUR } 4,900$ 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제3조 (1)에서 정하는 총신용액이 된다. 기타 비용이 없을 경우, 소비자는 신용 기한 동안 비용 100유로와 총신용액 4,900유로(실제로 소비자가 이용한 금액)로 구성되는 5,000유로를 상환한다. 총신용액이 5,000유로라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액(제3조 (h)에 따라 총신용액과 총신용비용으로 구성)은  $5,000 + 100 = \text{EUR } 5,100$ 이 되며, 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으로 조달되는 비용 사례는 설정 비용과 신용 허가나 송금 수수료, 신용보험 및 PPI를 위한 일회성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4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8/48/EC(Consumer Credit Directive) in relation to costs and the 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2012. 8. 5, p.15-16.

44) 채권자의 식별자나 로고와 같이 신용 상품의 특징이나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 기

계약 이전 정보에 대해서는 부속서 II<sup>45)</sup>의 양식을 이용하여 표준 정보뿐 아니라, “채권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정보는 별도 서류로 제공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CCD 제5조(1)). 이 규정은 기타 추가 정보와 구분되는 표준 정보의 중요성이나 명확성, 간결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제4조에서 규정하는 표준정보 요건은 EU 회원국의 전체적인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명시된 항목에 관하여 기타 요건을 국내 규정에 별도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회원국은 표준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 정보 요건에 관한 회원국의 재량권은 CCD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제한된다. 이러한 원칙은 제4조가 UCPD(Directive of Unfair Commercial Practices)<sup>46)</sup>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CCD 제4조에 언급되는 정보 요건뿐 아니라 광고 자료 일체는 혼동을 일으키는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UCPD 제6조 및 제7조가 요구하는 대로 소비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sup>47)</sup>

---

타 정보도 눈에 떨 수 있으나, 이는 대표 사례의 명확성이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5) 다만, 단기 양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2조 (3), 제2조 (5), 2조 (6)에 언급되는 신용 계약에 대해 부속서 III의 양식을 이용한다.

46)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and 2002/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OJ L 149, 11 June 2005.

47) 일례로 신용 상품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특정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언급하지 않는 광고는 UCPD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채권자가 ‘최고’ 금리나 추가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초기 저리 내역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UCPD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UCPD를 이용하여 주요 정보의 누락이나 포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이의 제기는 CCD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 상관습의 UCPD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광고주(예: 채권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CCD 및 UCPD의 이 같은 적합성 평가는 주로 EU 법률을 고려하여 개

(3) 계약 이전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 이전 정보에 대해 제5조(6)은 회원국이 채권자(또는 해당 신용 중개업자)에게 다음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약 이전 정보나 제안 상품의 주요 특성, 소비자 지급 불이행 결과를 비롯한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적절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여신계약안이 본인의 요구와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sup>48)</sup> 둘째, 회원국은 여신계약이 판매되는 특정 상황이나 판매 대상, 판매 신용 유형에 맞게 해당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과 범위뿐 아니라 제공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sup>49)</sup>

셋째, 계약 철회권의 행사 방식이나 시기를 비롯하여 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설명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기타 상품과 구분될 수 있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신용상품의 운용 방식과 신용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예를 들어 다양한 인출 및 상환 패턴을 토대로 신용 비용을 나타내는 예시 사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차용인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계약 특징에 관한 설명,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인출된 최고액의 비율로 계산되는 수수료나 차입 금리 변경,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요금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

별 회사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회원국 국내 당국에서 각 사례별로 수행해야 한다.

48) 제6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전문 23에 제공되는 근거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나 상품, 소비자가 해당 설명을 정당화하는 경우 관련 설명을 의무화할 수 있다.

49) 예를 들어 제5조 (6)의 상황에서 회원국은 채권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계약 이전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계약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거하는 지급 불이행 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지급 연체나 누락에 대한 추가 비용이나 금리 인상, 신용 상태 저하, 법적 조치, 관련 비용을 밝히도록 하였다.<sup>50)</sup>

## 6. 중개업자의 공개의무

금융소비자에게 신용공여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광고 또는 다른 수단으로 그들의 지위를 밝혀야 한다(예컨대, 독립적으로 일하는 중개업자인지 또는 독점적으로 여신공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하여 일하는 대리상인지 등). 또한 금융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여야 함. 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신용제공자에게도 넘겨줌으로써 금융업자가 APR의 계산에 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Ⅲ.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 1. 불공정계약 체결의 금지

방문판매나 기타 판매 기법을 금지하는 국가 규정과 계약철회 기간은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일정한 형태의 요청하지 않은 접근을 금지할 뿐 아니라 자택이나 직장에서 소비자에게 여신계약 체결을 청탁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신용을 완전히 투명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 제공되는 총액의 제공이나 인출 권리에 대한 대부기관의 제약은 대부기관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투명해야 하며 대부기관이나 중개인을 부정하게 보상하거나 소비자가 비용이나 상환 약관 일체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50) EUROPEAN COMMISSION, p.16-17.

뿐만 아니라 차용 자본 전액이나 일부에 저당을 설정하거나 이의 전액이나 일부를 이용하여 예금을 개설하거나 자본 상품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여신액 이용 조건으로)과 같이 불공정 약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 2. 조기상환

소비자들은 대출기간 만료이전에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의 0.5% 또는 1% 범위 내에서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조기상환의 경우 여신공여자는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액 감소부분을 알려주어야 하며, 향후 갚아나가는 액수에서의 변화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계약철회

체결한 계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 체결 후 약관과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제14조)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반환일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철회로 인한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러한 철회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는 두지 않고 있다.

# IV. 대출의 적정성 판단

## 1. 여신공여자의 금융소비자 상환능력 검토의무

여신공여자는 신용공여계약의 체결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금융소비자의 상환가능성(신용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제8조).



신규신용공여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여신공여자의 신용한도를 상당히 상향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sup>51)</sup>

## 2. 여신공여자의 신용공여거절통지의무

여신공여자가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반드시 신용평가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신용검토를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신용공여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무런 수수료의 징구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한편, 국제신용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신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 회원국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sup>52)</sup>

## 3. 금리산정의 적정성 및 설명의무

### (1) 총신용비용

소비자에 대한 총신용비용(total cost of the credit to the consumer)은 공증 비용을 제외하고 이자와 수수료, 세금, 기타 제 수수료를 비롯하여 소비자가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공개되는 비용 전액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신용을 취득하거나 시판 약관에 따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서비스 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여신 계약에 관한 보조 서비스에 대한 비용, 특히 보험료도 포함된다(제3조(g)).

---

51) 다만, 상환가능성의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Office of Fair Trading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이드라인(“Irresponsible Lending - OFT Guidance for Creditors”)을 제시하고 있다.

52) 이기종, 앞의 논문, 670면.

즉, 총신용비용은 공증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신용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하고,<sup>53)</sup> 채권자가 숙지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여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제세, 수수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신용 중개 수수료(제21조(c)), 행정 수수료, 회비, 계산 명세서 제공 비용, 우편 요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총신용비용은 신용 비용으로 제한하며 상계 소득이나 이익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제3조(g)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해당 소득이나 이익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sup>54)55)</sup>

## (2) 금리의 산정 및 설명의무

### 1) 연리의 정의

일부 회원국은 최대 금리 또는 고금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CCD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회원국 간에 큰 편차를 나타내는 접근방식을 공개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폭리에 관한 논쟁을 취급할 수 있다는 집행위원회의 희망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리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 여신계약에 가장 큰 고려사항에 해당할 것이므로 ‘소비자여신지침’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연리(APR: 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의 개념을 명시하고, 부속서에서 상세한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있다.<sup>56)</sup>

---

53) 이는 신용 비사용과 연계되는 휴면 또는 휴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 (1)(i) 및 제6조 (1)(e)에 의거하여 계약 이전 정보와 제10조 (2)(k)에 의거하는 계약 정보의 일환으로 본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5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8/48/EC(Consumer Credit Directive) in relation to costs and the 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2012. 8. 5, p.14.

55) Id. p.15.

56) 소비자여신지침은 연간대출이자율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콘텐츠를 보존하기 위하여 EU 전역에서 총신용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 요소를 균일하게 판단하는

연리(APR)는 “매년 여신기관과 차용인이 합의하는 현재 또는 기존 약정, 대출, 상환, 요금 일체의 현재 가치를 균등화”하는 이율이다(본 지침 제(1)(a)조). 즉, 당좌예금 선급금과 당좌대월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보다 일반적으로 사후 부채 금리가 계산되는 모든 여신 계약의 규제를 원할 경우 본 금리는 연리뿐 아니라 정기 금리를 정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금리를 전체 회원국에 적용하여 명세서를 비교하고 지정 기간 동안 청구되는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제4조).<sup>57)</sup>

## 2) 연리 계산 근거

APR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차입 금리나 해당 국내법에 따라 다양한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실시하는 내부 계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은 단리나 복리의 사용이나 다양한 복합 빈도(일일, 주별, 월별 등)를 포함할 수 있다. CCD는 이자 계산에 사용하는 방법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및 채권자는 해당 비용에 사용되는 계산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2011년 개정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APR 계산법과 필요한 경우 이러한 계산에 사용하는 가정은 CCD에 정의되었으며, 전문 19에서 “상품의 투명성과 비

---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문 43은 “역내시장의 설립 및 기능을 증진하고 공동체 전역에서 엄격한 소비자 보호를 구현하려면 공동체 전역에서 연리에 관한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지침은 소비자에 대한 총신용비용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단, 소비자의 지불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불은 자본 상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지불액은 이자나 행정비용, 유지비용, 인출 또는 결제 비용, 부대 서비스 비용 등이 될 수도 있다. 채권자는 다양한 방식과 변수를 이용하여 지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액 계산법의 모든 차이는 APR 계산에는 의미가 없다. 방정식에서 유일한 미지의 값으로 APR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은 소비자의 지불액 및 지불일 신용 인출액이 알려지거나 제19조 및 부속서 I에 명시하는 APR 계산을 위한 가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교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는 특히 공동체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신용에 적용되는 연리를 포함해야 한다. 차입 금리와 분납 빈도, 금리 자본화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관련 소비자 신용에 대한 재래식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CCD는 이자 계산에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APR 계산에 고유의 방법을 부과한다. 이러한 고유의 방법은 APR을 계산하는 단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비용의 비교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적용한다. 단, 이자 계산 방식에 관계없이 차입 금리는 광고를 비롯한 기타 문서에 연리로 표시해야 한다(제3조 (j)). 이는 차입금리를 APR<sup>58)</sup> 및 기타 신용 상품과 신속하게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APR의 공개

CCD에서 APR의 공개뿐 아니라 기타 정보의 공개는 소비자 보호 목표의 핵심을 차지한다. 본 요건은 CCD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여신 계약과 3단계 계약(광고, 계약 전, 계약 단계) 전체에 적용한다.

다만 이 원칙은 몇 가지 예외를 둘 수 있는데,<sup>59)</sup> 첫째, 1개월 안에 상환되는 당좌대월 상품은 CCD 범위에서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CCD 제6조 (5)는 계약전 단계의 대표 사례로 예시되는 APR을 포함하는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3개월 이내에 상환되는 당좌대월 상품에 적용되는 light regime에 따라 회원국은 모든 과정 단계에 APR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단 총신용비용은 제10조

---

58) 회원국은 APR 계산과 동일한 규칙을 이용하여 차입 금리를 유효연리(EAR: Effective Annual Rate)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임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비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항상 APR 과 동일해질 것이다.

59) CCD 는 당좌계정에 속하는 초과 및 당좌대월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5)(f)에 의해 당좌대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APR 계산과 동일한 가정을 참조하여 계산해야 한다.

셋째, 초과액의 형태로 여신계약에 적용되는 광체계에 따라 APR이나 대표 사례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제2조 (4)에 따라 CCD 제1조 내지 제3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32조만 초과 신용에 적용된다. 이에 덧붙여 제18조 (1)에서 제정하는 대로 소비자가 초과할 수 있는 당좌계정 개설 계약은 제6조 (1)(e)에 언급되는 정보, 즉 APR을 포함하지 않는 차입금리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18조 (2)에 따라 초과액이 상당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되 이번에도 APR은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3개월 안에 상환되는 당좌대월 상품과 초과 형태의 신용 계약은 광체계 계약이다. 즉, CCD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조항만 동 계약에 적용되며 기타 조항은 제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는 전문 11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지침이 일부만 적용되는 특정 신용 계약의 경우, 회원국은 본 지침의 기타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을 채택할 수 없다. 전술한 대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3개월 이내에 상환되는 당좌대월 상품에 적용되는 조항은 모든 단계에 APR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회원국에 부여한다. 단, 초과 신용의 경우 APR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모든 단계에 CCD에서 정하는 APR 공개를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입수하는 비용 척도를 언급하기 위하여 APR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단, 이는 회원국이 당좌계정 계약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따라 임시비용 척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는 CCD 범위를 벗어난다. 단, CCD가 적용되는 정보 측면에 대해서는 CCD 제18조의 정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용이 실행된 후 APR 공개에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 CCD는 차입금리나 총신용비용의 일부를 형성하는 비용이 변경되거나(제 11조 및 제12조 (2) 참조) 관련 계약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APR의 공개를 채권자에게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CCD는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AP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APR의 처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기존 계약과 관련된 변경의 처리를 규제할 수 있다.<sup>60)</sup> 이는 CCD에 따라 APR을 공개할 경우에는 향후 또는 기존 약정(인출, 상환, 비용)만 제19조 (1)에 따라 계산에 참작해야 한다. 이는 제 당사자의 과거 약정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APR 계산 정리

APR에 대한 계산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 대출계약에서 소비자가 대출한도액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액수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대출한도액을 기준으로 APR을 계산한다.
- (b) 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액수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추가대출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별도의 만기 또는 별도의 한도 등)을 두는 경우에는, 대출초기부터 존재하던 별도의 대출로 간주한다.
- (c) 수수료나 이자율 등에 있어서 다양한 조건의 대출이 존재할 경우 APR 산정에는 가장 높은 수수료 및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d) 마이너스통장이나 초과수표금에 대한 지급약정(당좌대월)을 한 경우에 공여 가능한 총액을 약정기간동안의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약정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 당좌대월 이외의 개방형조건의 대출계약(open-end credit agreement)<sup>61)</sup>의 경우에는, 최초 대출사용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기산점으로 하고, 최

60) 예를 들면 역내시장 결제 서비스에 관한 지침 2007/64/EC, 제42조 (3) 및 제44조가 이에 해당한다.

61) 계약기간내 아무런 수수료 없이 수시로 원금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전액 상환이 가능.

종 상환금의 납부를 종기로 한다. 최초 대출금 인출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부터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일시상환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반복적 대출과 상환은 1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자와 기타 수수료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및 상환에 따라 적용된다.

- (f) (d)나 (e)에 언급된 경우 중 당좌대월이나 개방형대출이 아닌 대출계약의 경우 날짜나 상환액이 (APR 계산을 위하여)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상환일로 하고, 가장 적은 금액을 상환액으로 한다. 대출계약서의 체결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액의 최초 수령일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한다.
- (g) 대출계약서 또는 상기 (d)(e)(f)에 의하더라도 상환일과 상환액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상환을 계약조건에 따른 상환으로 간주하며, 이자가 붙는 수수료의 지급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상환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는 계약체결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상환과 함께 정기적으로 분할납부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동등액으로 간주한다. 최종상환액의 납부는 모든 수수료와 이자의 완납으로 간주한다.
- (h) 대출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상한은 EUR 1 500로 간주한다.
- (i) 특정기간 또는 특정액수의 대출에 다른 이율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율을 기준으로 APR을 계산한다.
- (j) 최초 대출기간에는 확정금리로 대출이자 정하여지고, 이후 새로운 대출이자 정해진 경우 APR의 계산은 최종 대출기의 이자율과 APR계산 시점의 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

자료 : 김희철, 앞의 자료집, 50-51면.

## V. 지급불이행 처리 개선

### 1. 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

지급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대부기관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지침 87/102/EEC 제1a조, 제2조 v)에 기술되는 보험은 이

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보험이 선택사항인 상황과 의무인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둘째, 의무 보험의 경우 보험비용은 APR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보험은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기관 계약이 선택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보험 가입에 암묵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인위적인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

셋째, 보험이 의무보험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를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선택에 대한 이 같은 단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신용 비용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부기관에 추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여신계약 포트폴리오의 의무종합보험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대부기관의 포트폴리오와 보험 가입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을 분석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존속하는 규칙을 엄수하여 대부기관이 신중하고 모범적인 업무 관리 규칙을 벗어나 감수하였다고 간주되는 위험이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관한 상황과 후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센터에 관하여 예상되는 제도를 보유하면 위에 열거된 위험이 완화된다. 보험 의무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대해 진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쌍무계약을 방지하며 이에 따라 해당 보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 2. 계약 불이행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논의

불이행에서 유래하는 문제는 여신계약뿐 아니라 담보약관과도 관계되며 연체금이나 암묵적 또는 무단 당좌대월, 총체적 불이행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비용과 금리 전액은 여신계약에 기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국은 관련 당사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부채 요인이자 대부기관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되는 암묵적 또는 무단 당좌대월은 일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예외적 상황이나 용인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분에 적용되는 금리는 조화된 방식으로 계산하고 소비자에 대한 전달은 항상 보장해야 한다. 본 기간이 종료될 때 존속하는 암묵적 초과분은 고객 위험의 새로운 평가를 충분히 참작하여 신규 여신계약을 통해 규칙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EU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보완 사항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관련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가 부족액을 보완하거나 부채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제공하는 사전 정식 고지 원칙(자동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전제)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뿐 아니라 보증인은 일차 요청에서 무료 및 상세 분류를 즉시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특정 채무 추심 조치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섯째, 물품 회수의 맥락에서 법원의 통제 강화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급 불이행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회원국에서는 연체 대금에 부과되는 금리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요금은 전액 제외한다(적법한 요금 제외). 그러나 불이행에 관한 규칙과 채무 추심 방법은 국가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불이행은 대부분 사용자나 연기금 등에 전달되는 등기우편을 통한 보수의 직접 이체 절차를 적용하여 해결되며,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법원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비용 구조도 다양하다.

### 3. 과다부채

여신계약에 관한 국내법 조화와 관련된 지침은 다면적 속성을 갖는 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첨단 형태의 소비자 신용이 과다부채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 초안에서 예방적 조치가 제안된다.

특히 예방은 관련 파트너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정 “생애 사건” 등에 관한 포트폴리오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예상되는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

### 4. 감독권

금융소비자와 여신공여자간에 체결된 계약관련 이의제기를 접수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EU 회원국이) 설치하도록 하고(제12조 제 1항) 여신공여자 및 중개업자의 등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감독 기관을 통하여 라이선스의 취소 중지 등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4 장 영국의 약탈적 대출규제

###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개관

#### I. 서 설

약탈적 대출이란 어느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중세의 세익스피어의 희곡(베니스의 상인)에서도 탐욕적인 대부업자가 주제로 다뤄질 정도이다. 오늘날의 영국에서도 payday loan 등 약탈적 대출에 관한 규제 논의가 꾸준하다.<sup>62)</sup>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는 1974년 영국 소비자여신법(Consumer Credit Act 1974)이 가장 기본법이다. 영국 장관(Secretary of State)은 1974년 소비자여신법(Consumer Credit Act 1974(a))의 §20 및 §182(2)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무책임한 대출: 채권자를 위한 공정거래청 지침(Irresponsible lending : OFT guidance for creditors)」(이하 공정거래청 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1974년 소비자여신법의 section 25(2B)의 목적을 위하여 무책임한 대출 관행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영업관행에 관하여 기업 및 소비자의 대표자들에게 좀 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 II. 적용범위

영국 소비자여신법의 규율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consumer credit agreement)이란 개인(차입자)과 그 외의 자(여신업자) 간에서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법 §8(1)). 이 때의

---

62) Express(internet news), “Irresponsible lenders facing more criticism,” June 2, 2013. <http://www.express.co.uk/finance/personalfinance/404354/Irresponsible-lenders-facing-more-criticism>

여신(credit)이란 현금대출(cash loan) 및 기타 형태의 재무적 제공(accommodation)을 말한다(법 §9(1)). 동법이 규율하는 계약은 토지의 매입자금을 용자하기 위한 계약 또는 토지 위의 주거물의 제공 및 토지 위에 토지모기지로 담보된 주거물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법 §16(2)), 순수한 신용에 기한 여신계약이나 리스계약이 동법의 주된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여신법은 소액여신계약(small agreement)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소액여신계약이란 50파운드를 넘지 않는 여신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할부구매계약이나 조건부매각계약이 아닌 여신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법 §17(1)).

## 제 2 절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검토

### I. 정보제공 의무

#### 1.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

##### (1) 설명의무의 이행

소비자여신법상 여신업자(creditor)는 해당 계약이 차입자의 필요와 재무적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하여 해당 차입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설명(adequate explana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55A(1)(a)).

또한 소비자여신법은 여신업자에 대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를 차입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법 §55A(1)(b)), 여신업자는 차입자가 그 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심층정보 및 설명을 여신업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입자에게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55A(1)(c) 및 (d)).

이와 관련하여 지침은 동법의 §55A(1)의 요건에 따라서,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적용면제대상인 계약이 아닌)이 차입자와 체결되기 전

에, 여신업자는 첫째, 차입자에게 법 §55A(2)에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 해당 계약이 차입자 자신 필요와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차입자에게 동법 §55(1)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참고하도록 조언하고, 정보가 개별적으로 그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그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차입자에게 그 계약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 넷째, 차입자가 여신업자에게 심층정보와 설명을 요구할 방법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지침 3.1).

## (2) 설명하여야 할 사항

여신업자가 계약 체결전에 차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i) 계약에서 제공된 여신이 특정 유형의 이용에는 부적합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질, (ii) 차입자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상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하의 전체부채의 금액이 얼마인지, (iii) 차입자가 예견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상당한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질, (iv) 차입자가 계약상 요구되는 시점에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입자에게 미치는 주된 결과(소송절차를 포함하여) 및 차입자 주택의 재점유(repossession)<sup>63)</sup>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v) 해당 계약을 철회할 권리의 행사의 효과 및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언제 행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법 §55A(2)).

이와 관련하여 지침은 소비자여신법의 §55A(2)에서 언급된 사항을 보면, 첫째, 계약상 제공되어야 하는 여신을 특정 사용 유형에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계약의 특질, 둘째, 차입자가 정기적으로 갚아야

63) Repossession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a financial institution taking back an object that was either used as collateral or rented or leased in a transaction. Repossession is a “self-help” type of action in which the party having right of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question takes the property back from the party having right of possession without invoking court proceedings. 출처: Wikipedia

할 금액 및 해당 계약상 값을 전체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셋째, 차입자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중요한 역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계약의 특질, 넷째, 계약상 요구되는 시점에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입자에게 발생하게 될 주된 결과<sup>64)</sup>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지침 3.2).

한편,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의 효과 및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여신중개업자(credit intermediary)가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55A(1)의 설명의무는 여신업자(creditor)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i) 60,26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 또는 (ii) 토지를 담보로 하는 계약이다(법 §55A(6)).

### (3) 성립예정인 계약에 관한 사본제공의무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신업자는 차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차입자에게 성립될 예정인 소비자여신계약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법 §55C(1)),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statutory duty)의 위반으로서 제소가능하다(법 §55C(3)).

다만 차입자의 요청이 있는 시점에 해당 여신업자가 계약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사본 제공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55C(2)). 또한 계약서 사본 제공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로 담보된 계약, 동산을 담보로 맡긴 계약, 60,260파운드를 초과하는 여신액을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 또는 주로 또는 지배적으로 영업의 수행 또는 영업의 수행을 의도하여 차입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이다(법 §55C(4)).

64) 이 경우 차입자의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proceedings) 및 재점유(repossession)(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설명의 정도

공정거래청은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여신상품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비례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며, 설명은 차입자가 해당 여신에 관한 상환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핵심적인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지침 3.3).

제공되어야 할 설명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신업자, 대표자, 대리인 또는 ‘관련된 제3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리고 관련되는 법적 요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지침 3.4).

첫째, 추구되는 여신의 유형, 여신상품의 유형마다 다른 특질을 가지며 이 경우 다른 수준의 설명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제공되는 여신의 양 및 관련비용 및 차입자가 지는 위험: 차입자에게 미치는 위험은 그의 재무적 상황에 관련된 여신의 총비용이 더 높을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공되는 설명에 관한 차입자의 적절한 이해수준(이해수준이 명백하며 식별가능하다는 정도일 것): 일부 차입자들은 다른 수준의 그리고 유형의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넷째, 여신거래가 발생하는 채널/매개체(예컨대 집이나 소매매장에서 ‘대면(face to face)’ 거래, 또는 전화로 하는 거래)는 원격지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이 일어나는 거래의 경우보다, 차입자가 질문하거나 명료성을 추구하는 기회를 더 잘 부여할 수 있다.

#### (5) 계약 전 설명절차의 구성요소

여신업자는 다음 사항을 차입자에게 알려야 한다(지침 3.13).

첫째, 여신계약상 제공되어야 하는 여신이 특정유형의 이용에는 부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질(존재하는 경우)을 알려야 한다. 둘째, 차입자가 해당 계약하에서 얼마나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① 계약하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총액(총액 결정 가부) 및 ② 각 재상환 기간마다의 상환액의 규모 및 재상환 횟수와 빈도가 포함된다.

셋째,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차입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효과를 알리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부채증가의 전체비용, ② 발생할 위약금 및 이자(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 훼손된 여신등급으로 인하여 신용이 좀더 곤란해지며 장래에 더 많은 비용소요를 초래한다는 것, ④ 법적 절차(법원 소송 및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⑤ 파산의 신청, 기타 매각신청 등, ⑥ 차입자의 주택 등 자산의 금융회사에 의한 재점유, ⑦ 유질계약에 있어서 담보물로 채무액이 벌충되지 않는 경우에 매각될 담보물이 해당된다.

넷째, 여신업자는 계약 철회권 행사의 효과,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중대한 역효과를 미치게 될 방법으로 운영될 계약의 특질을 알리도록 하였다.

## 2. 계약 체결시 및 체결 후의 의무

### (1)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여신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계약을 구체화하는 계약서에는 차입자나 리스이용자(hirer)가 ① 계약에 의하여 차입자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 ② 여신의 총요금의 액수 및 요율, ③ 동법상 차입자가 이용가능한 보호 및 구제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60(1)).

소비자여신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여신업자는 계약서사본 및 계약서에 언급된 기타 서류를 차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61A(1)). 다



만 미발효한 계약의 사본이 이미 차입자에게 제공되었고 해당 미발효 계약 내용이 실행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제공 의무는 없다(법 §61A(2)).

## II.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 1.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 금지

#### (1)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 및 절차의 규제

법 §55A(1)(a)에 따라서 적절한 설명의 제공을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거나(지침 3.15), 또한 차입자가 계약에 관한 심층정보 또는 설명을 요청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sup>65)</sup>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지침 3.16)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이나 절차에 해당되어 규제된다.\*

#### (2) 투명성에 반하는 행위의 규제

투명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예시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① 여신을 허여하기 전에 해당 여신계약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 것(지침 3.17), ② 차입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지침 3.18), ③ 차입자에게 계약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지침 3.19), ④ 적절한 구두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지침 3.20), ⑤ 특정한 이용유형에 부적합한 계약에 의거하여 여신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특질을 (특질이 있는 경우)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지침 3.21), ⑥ 차입자가 정기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 및 계약상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지침 3.22), ⑦ 차

65) 차입자가 정보나 설명에 접근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며 그리고/또는 부당한 시간지연을 겪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

입자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중요한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신계약의 특질을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지침 3.23), ⑧ 차입자의 주택의 법적 절차 및 재점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계약상 요구되는 시점에,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입자에게 발생하게 될 주된 결과를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지침 3.24), ⑨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의 효과 및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를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지침 3.25), ⑩ 차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차입자가 고려하도록 자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차입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법 § 55A(1)(b)의 요건에 좇아 차입자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음을 자문하지 않는 것(지침 3.26), ⑪ 차입자가 심층정보와 설명을 여신업자(또는 여신업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차입자에게 자문하지 않는 것(지침 3.27), ⑫ 차입자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중요한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신계약의 특질에 관하여 불충분하게 강조하는, 구두 또는 서면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지침 3.28)이 해당된다.

### (3) 물질적·심리적인 괴롭힘의 규제

차입자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다음 항목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여신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지침 3.29). 예컨대, ① 해당 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것, ② 적절하고 적합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가져가도록 계약에 관하여 여신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 ③ 심층정보와 설명을 요청하고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차입자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받았음을 서면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압박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지침 3.30)

## (4)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의 규제

제공된 정보나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님을 여신업자가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차입자에게 부정확하거나 진실이 아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지침 3.31). 또한, 여신중개업자가 법 §55A의 요건을 준수하는 설명을 차입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금지된다(지침 3.32).

## 2. 조기상환권의 보장

소비자여신계약의 차입자는 언제든지 여신업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총액과 법 §95A(2)<sup>66</sup>상 여신업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여신업자에게 지급할 권리가 있다(법 §94(1)). 이 경우의 통지는 토지로 담보된 소비자여신계약에 관한 통지가 아닌 한, 서면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법 §94(6)).

만일 관련 법령상의 요건 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조기상환 추가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불공정한 관행이 된다(지침 6.23). 또한 여신계약의 조기청산에 관한 금액을 산정·제시하면서, 차입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97에 의거한 계산서(또는 부분 상환의 효과에 관하여 법 §97A에 의한 서면)를 차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투명성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지침 6.14).

---

66) 여신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여신기간동안 차입자가 진 채무의 결과로서 그 여신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요건은 (i) 법 §94의 지급액수가 £8,000을 넘거나, 12개월간 두 번이상 상환된 경우에는 그 지급총액이 £8,000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ii) 해당 여신계약이 차입자가 당좌예금(current account)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아니며, (iii) 법 §94의 지불액이 지불보호 보험계약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법 §95A(2)).

### 3. 계약철회권의 보장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의 차입자는 이유 없이 동법 §66A에 따라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법 §66A(1)), 이 경우 계약을 철회하려면 차입자는 여신업자에게 계약체결일 등67)의 이후 14일 이내에 여신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 §66A(2)). 또한 규제대상인 계약에 대하여 차입자나 리스이용자(hirer)는 원칙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i) 토지담보계약, 토지매입자금 용자를 위한 제한용도의 여신계약이거나 또는 토지매입과 연계된 브릿지론 계약의 경우, 또는 (ii) 여신업자 또는 소유자 등이 영업을 수행하는 전제에서 해당 차입자 또는 리스이용자(hirer)가 서명한 미실행 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될 수 없다(법 §67(1)).

이과 관련하여 지침은 법 §66A의 철회권은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 계약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만 ① £60,260을 초과하는 여신, ② 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여신계약, ③ 토지 매입에 자금을 대기 위한 제한된 용도의 여신계약, ④ 토지의 매입과 연관된 브릿지 론을 위한 계약, ⑤ 당좌대월계약(overdraft agreement)<sup>68)</sup>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지침 3.13).

차입자들은 계약체결 시점, 여신업자가 차입자로부터 계약상의 여신 한도액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신업자가 실제로 알린 시점 등으로부터 14일간은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여신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67) 또는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계약상의 여신한도액을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 여신업자가 최초로 알린 일자, 또는 실행된 소비자여신계약의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 차입자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 등을 말한다(법 §66A(3)).

68) 다만 여신이 요구불 지급조건이 아니거나 3개월 내의 기한이 아닌 경우 비사업적 목적으로 체결된 당좌대월계약은 제외한다.

### Ⅲ. 대출의 적합성 판단

#### 1. 계약 체결 전 차입자의 상환능력 검토의무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신업자는 차입자의 신용도(creditworthiness)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법 §55B(1)). 또한 여신업자는 (i)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하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여신금액을 상당정도(significantly) 증액시키기 전에, 또는 (ii)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상 당좌계정(running-account) 관련 여신에 관한 여신한도를 상당정도 증액시키기 전에,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법 §55B(2)).

이 경우 신용도 평가는 (i) 차입자(적절할 경우) 및 (ii) 신용조회기관(credit reference agency)(필요할 경우)로부터 획득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야 한다(법 §55B(3)). 동법상의 신용도 평가의무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토지를 담보로 하는 계약이거나 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계약이다(법 §55B(4)).

#### 2. 상환능력의 평가

##### (1) 상환능력의 평가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의 평가(assessing affordability)<sup>69)</sup>는 차입자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신약정의 잠재성 역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업자가 해당 여신을 할 시점에 알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지침 4.1).

---

69) 차입자가 특정 여신약정이나 특정한 부가 여신약정을, 해당 차입자에게 (그이상의) 재무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도록 함이 없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수할 차입자의 능력을 여신업자가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차입자-중심 테스트(borrow-focussed test)’를 말한다.

상환능력 평가의 일부로서 여신업자가 이용하는 정보의 수단과 출처는 추구되는 여신의 위험과 관련하여 문제된 차입자가 지속적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지침 4.2).

1) ‘8가능한 방식’의 해석

공정거래청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차입자에 의하여 상환될 수 있는 여신이란 ① 부당한 어려움이 없을 것- 특히 부채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킴이 없을 것, ② 여신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존속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③ 소득 가용가능한 저축으로부터, 즉 담보나 자산처분할 할 필요 없이 상환될 수 있는 경우로 본다(지침 4.3).

2)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의 해석

공정거래청은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를 차입자가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여신 허여시점에 합리적으로 예견불가능한 개인적인 상황변경이 없는 경우에)(지침 4.4). 예컨대, ① 다른 채무 상환의무 및 기타 통상적/합리적인 지출액(outgoing)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② 이들 상환의무를 이행하고자 더 많이 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일정하게 제한된 상황, 예컨대 일시적으로 고정된 기간동안 임시로 소득 감소가 있거나 소득수입이 없다고 알려지는 경우와 같은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상환기간이 미리 합의되었고 최초의 상환분을 이행할 상황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차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견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상환능력 평가에 기초하여 그 시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여신을 허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지침 4.9). 그러나 소득이 감소되는 고정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한정적인 적용예외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 (2) 상환능력 평가의 고려요소

## 1) 일반적인 고려사항

일반적인 특정 상황에서 상환능력 평가의 범위 및 정보는 여러 요소에 의존하고 해당 요소들에 상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고려 요소는 ① 여신상품의 유형, ②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여신금액 및 관련 비용과 위험, ③ 여신 추구 즈음의 차입자의 재무 상황, ④ 차입자의 여신이력,<sup>70)</sup> ⑤ 차입자의 기존 및 장래 재무적 약정,<sup>71)</sup> ⑥ 차입자의 개인적 상황의 장래 변화의 영향,<sup>72)</sup> ⑦ 차입자의 취약성<sup>73)</sup>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것으로 포함할 수 있다(지침 4.10).

이상의 사항들에 대하여 여신업자는 예컨대 추구되는 여신의 유형 및 금액 및 차입자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에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 것에 관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지침 4.11). 또한 여신업자는 상황에 따라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정보의 다양한 유형 및 원천<sup>74)</sup>을 이용할 수 있다(지침 4.12).

70) 차입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었다는 징표가 포함될 것

71) 기타 금융상품의 관점에서 변제기한이 된 상환의무 및 중요한 비여신약정(significant non-credit commitments)이 포함되며, 여신업자가 알고 있는 ‘장래의 재무적 약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여신업자가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알리기 위하여 차입자에게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요청을 하였고 해당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가 상당부분 부정확한/사실이 아닌 경우이며 여신업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여신업자가 과실이 있다(culpable)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비여신 약정’에는, 예컨대 임차료, 공과금,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등이 포함될 것이다.

72) 예컨대, 은퇴 또는 고정기한의 고용계약 종료와 같은 상황에 의하여 현재의 고용상태의 종료일이 알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차입자의 가처분소득의 삭감에 이를 수 있다. 정리해고당할(redundant) 가능성은, 이 가능성이 상환능력 평가 시점에 열리지 않은 경우에, 여신업자들이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공정거래청이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73) 예컨대, 차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와 설명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보와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차입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였다고 알려지거나 결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지의 여부

74) 차입자와의 직전 거래기록, 소득 관련 증거, 지출의 증거, 신용점수, 신용조회기

## 2) 소득관련 고려사항

여신업자들이 상환능력 평가에서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에, 여신계약의 기대되는 상환기간에 관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중요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 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정도까지) 현재의 실제소득 및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소득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평가는 평가가 행해진 시점에 알려진 것에 기반하여야 한다(지침 4.13).

그러나 보조소득 수입이 평가시점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보조소득에 관한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소득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령될 것으로(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수령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지침 4.13).

여신업자가 상환능력 평가에서 지출을 고려하는 경우에, 정기적인 가구지출 및 상대적으로 고정된 지출비용(예컨대 월세지출)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지침 4.14).

소득에 관한 소득주체의 확인(self-certification)은 중요한 장기 여신계약, 특히 재산으로 담보된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신업자가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의 일부로 차입자의 소득 또는 지출에 관한 서류증거(documentary evidence)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지침 4.15).

## 3. 일정한 무책임한 대출관행

공정거래청이 상황에 따라서 무책임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관행은 다음과 같다.

---

관의 신용보고서, 차입자로부터 얻은 정보로서, 신청서 또는 개별적으로 얻은 정보



## (1)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 및 절차

상환능력의 합리적인 평가에 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집행하지 않거나, 개별 사건에서 합리적인 상환능력 평가를 착수하지 않거나, 여신을 허여하거나 제공여신의 총액을 상당부분 증액시키거나 또는 당좌계정의 여신계약의 경우 여신한도액을 상당부분 증액시키기 전에, 합리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 등에 해당한다(지침 4.19-4.21).

법 §55B하에서 여신업자는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상의 여신액을 상당부분 증액하기 전, 또는 규제대상인 당좌계정에 관한 소비자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를 상당부분 증액하기 전에, 차입자의 신용정보에 관하여 평가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침은 소비자여신계약을 차입자와 체결하거나,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제공한 여신금액을 상당정도 증액하기 전에, 또는 여신한도를 상당정도 늘리기 전에, 법 §55B의 요건에 쫓아서, 적절한 경우 차입자로부터 획득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신용조회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차입자의 신용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 및 절차로 본다(지침 4.22).

여신허여 시점에 여신업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잠재적인 차입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환의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지침 4.23), 상환능력의 고려를 여신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equity) 평가에만 (주로) 기반하는 경우(지침 4.24), 상환능력의 평가를 착수함이 없이 여신신청을 허용하는 것, 상환능력 평가에 기반할 때 해당 여신이 지속불가능할 수 있다고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여신신청을 허용하는 것, 차입자가 기존 채무를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늘

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도록 부적절하게 장려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영업관행 및 절차에 해당한다(지침 4.24-4.26).

또한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에 기반하여 더 다액의 여신액의 상환은 해당 차입자가 감내할 수 없음이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야 하는 경우에, 차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다액을 차입자가 대출받도록 자문하거나 장려하는 것(지침 4.28), 상환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여신신청에 관한 정보가 완벽하고 정확하도록,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지침 4.29), 차입자가 완성하도록 의도되어 있으며 차입자가 자신을 대리하여 그렇게 하라는 사전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신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는 것(지침 4.30)<sup>75)</sup>, 차입자가 상환능력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정직하지 않았음이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신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지침 4.31).

#### (2)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

여신신청서에 관하여 대출을 감당할 능력(affordability)의 평가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작(falsify)하도록 차입자를 유도하거나 꾀거나(지침 4.32), 차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 없이 여신신청 관련 상환능력의 평가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지침 4.33)은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

### 4. 금리산정의 규제

소비자여신법은 소비자여신계약상 차입자에게 발생하는 진정한 비용(total charge for credit<sup>76)</sup>; 여신에 관한 전체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

75) 다만 차입자가 해당 신청이 정확하게 완성되었다고 체크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가능한 경우 차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그리고 여신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정보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6) 구체적인 정의는 소비자여신법 §20(1)을 참조.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법 §20(1)). 이에 따라서 2012년 소비자 여신(여신을 위한 총부과금)규정(Consumer Credit (Total Charge for Credit) Regulations 2012)(이하 부과금규정)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 또는 장래의 소비자여신계약 하에서 제공될 수 있는 여신에 관한 총요금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차입자에 대한 여신총비용이 된다(부과금규정 §4(1)).

아래의 §4(3)에 따라서 ① 지급거래와 인출 모두를 기록하는 계정의 유지비용, ② 지급거래와 인출 모두를 위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용, ③ 지급거래에 관련된 기타 비용은 차입자에 대한 여신총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부과금규정 §4(2)).

다만 위 §4(2)에서의 ① 계좌 개설여부가 선택적이며, 계좌 비용이 차입자와의 소비자여신계약 등에서 명백하고 개별적으로 이미 제시된 경우, ② 당좌대월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과 무관한 비용은 차입자에 대한 여신총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부과금규정 §4(3)).

부가서비스(ancillary service)<sup>77)</sup> 비용은 부가서비스계약의 체결이 여신 획득 또는 홍보되는 조건과 상황(terms and conditions)에 관하여 여신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여신총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부과금규정 §4(4)).

차입자에 대한 여신총비용에는 ① 차입자에 의하여/차입자를 대신하여 지불되어야 하거나, 차입자가 해당 소비자여신계약상의 약정을 어길 경우 차입자의 관계자가 지불하여야 할 모든 요금, ② 거래가 현금 또는 신용으로 실행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차입자 또는 차입자의 관계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부과금규정 §4(5)).

77) 부과금규정 §4(4)에서 부가서비스의 언급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여신계약상 여신의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이며, 특히 보험 또는 지불확보증권(payment protection policy)을 포함한다(부과금규정 §4(6)).

제 4 장 영국의 약탈적 대출규제

연리의 산정은 부과금규정의 스케줄(Schedule)에 따라서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부과금규정 §5).

$$\sum_{k=1}^m C_k (1+X)^{-t_k} = \sum_{l=1}^{m'} D_l (1+X)^{-S_l}$$

X is the APR;

m is the number of the last drawdown;

k is the number of a drawdown, thus  $1 \leq k \leq m$ ;

$C_k$  is the amount of drawdown k;

$t_k$  is the interval, expressed in years and fractions of a year, between the date of the first drawdown and the date of each subsequent drawdown, thus  $t_1 = 0$ ;

$m'$  is the number of the last repayment or payment of charges;

l is the number of a repayment or payment of charges;

$D_l$  is the amount of a repayment or payment of charges;

$S_l$  is the interval, expressed in years and fractions of a year, between the date of the first drawdown and the date of each repayment or payment of charges.

## 제 5 장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 제 1 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 I. 서 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은행의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여신한도 증액 등과 관련하여 약탈적인 대출행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sup>78)</sup>

호주는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2009년에 제정하여 책임 있는 대출행위(responsible lending conduct)를 구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책임 있는 대출의무의 충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은 ‘여신면허: 책임 있는 대출행위(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라는 제목의 지침 209(Regulatory Guide 209)(이하 규제지침)’를 작성하여 여신업자 및 여신신청자(차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책임 있는 대출행위와 관련된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 3장 및 관련지침(Regulatory Guide 209)<sup>79)</sup>의 관련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ASIC은 동 지침에 관하여, 여신관련 피면허자<sup>80)</sup>, 여신신청인 및 면허를 받지 않은 기존대출자<sup>81)</sup>(이하 ‘미면허기존대출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지침으로 밝히고 있다.

78) World Today (broadcasting reporter: Simon Santow), “Banks under fire for irresponsible lending,” (12:10pm on ABC Local Radio), 출처: <http://www.abc.net.au/worldtoday/content/2008/s2449226.htm>.

79) 동 지침의 현행 버전은 2013년 2월에 개정된 것이다.

80) 여신면허를 받은 자를 가리키므로 여신업자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81) 미면허기존대출자(a lender with carried over instruments)란 2010년 6월30일 이래로 새로운 여신계약을 청약받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여신제공자 또는 여신리스업자(lessor)로서 기존의 계약에 관한 주심을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ASIC (홈페이지: <http://www.asic.gov.au/asic/ASIC.NSF/byHeadline/Lenders%20with%20carried%20over%20instruments>).

## II. 적용범위

호주의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전국여신법(National Credit Code<sup>82</sup>)상의 여신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다. 전국여신법상 여신계약(credit contract)이란, 여신(credit)이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계약이며(법 §4). 이 경우 여신이란 계약상 (i) 어떤 자(debtor)가 다른 자(credit provider)에게 지는 채무의 상환 또는 (ii) 어떤 자(debtor)가 다른 자(credit provider)에게 지불을 연기한 채무를 일으키는 경우에 여신이 제공된다고 정의된다(법 §3(1)). 이 경우 여신금액에는 실제로 일으켜진 채무 액수만 포함되며 이자액이나 수수료나 요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법 §3(2)).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여신행위(credit activity)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신행위(credit activity)는 여신계약(credit contract), 여신서비스(credit service), 소비자리스(consumer leases), 모기지(mortgages), 보증(guarantees), 기타 규정(regulation)에 규율된 행위로 나뉜다(법 §6(2)). 동법상의 소비자(consumer)란 자연인(natural person) 또는 각 유형의 법인(strata corporation)을 말한다(법 §5).

이중 여신서비스(credit service)란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법 §7). 여신지원행위(credit assistance)란 여신지원자 또는 다른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영업과정이나 그 일부 또는 영업의 부수적으로 소비자 또는 해당소비자의 대리인(agent)와 직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그 자가 (i) 소비자가 특정 여신제공자와 특정 여신계약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ii) 소비자가 특정 여신제공자와 특정 여신계약의 여신한도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iii) 소비자가 어느 여신제공자와 특정 여신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안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 §8).

---

82)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의 schedule 1에 해당한다.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동법 제3장에서 책임있는 대출행위(responsible lending conduc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다시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피면허자(part 3-1), 여신계약상 여신제공자인 피면허자에 관한 규율로서 다시 일반규칙(part 3-2), 신용카드 계약에 관한 부가규칙(part 3-2B), 단기 및 소액 여신계약에 관한 부가규칙(part 3-2C) 및 피면허자와 역모기지(part 3-2D), 소비자리스에 관련된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피면허자(part 3-3), 소비자리스에서 리스업자인 피면허자(part 3-4), 여신대표자(part 3-5), 채무추심자(part 3-6), 기타사항(part 3-6A), 제3장에 관한 예외 및 수정사항(part 3-7)로 구성된다.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여신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경우에 준하여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 제 2 절 호주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 I. 정보제공 의무

#### 1.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중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피면허자(part 3-1)」부분은 세부적으로 여신지원제공자의 여신지침(credit guide), 여신계약을 위한 여신지원의 제공 전에 여신지원 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두고 있다.

##### (1) 피면허자의 여신지침 제공의무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part 3-1, division 2의 대표적인 규율을 살펴보면, 여신지원제공자의 여신지침(credit guide)과 관련하여 어느 소비자와 여신계약에 관한 여신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해당 피면허

자에게 명백하게 되면 그 직후 해당 피면허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2)에 따라서 피면허자의 여신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법 §113(1)).

이 경우 피면허자의 여신지침에는 피면허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이 규율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함은 물론, 이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는 해당 여신지원을 위하여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모든 수수료(fee)와 모든 요금(charges) 및 이들 수수료와 요금의 산정방법, 피면허자 또는 그 고용인, 해당 피면허자의 이사 또는 여신대리점(credit representative)은 해당 피면허자가 여신지원을 제공한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모든 커미션(commissions) 및 그 액수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금액 및 계산방법,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면허자의 내부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물론 해당 피면허자가 구성원인 승인된 외부 분쟁해결기구(scheme)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계약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피면허자의 절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법 §113(2)).

만일 법 §113(1)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sup>83)</sup>의 위반이 되며 형사제재<sup>84)</sup>를 받는다(법 §113(5) 및 (6)).

## (2) 여신지원 제공 전에 여신지원제공자가 지는 의무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part 3-1, division 4는 여신계약을 목적으로 여신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여신지원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우선 피면허자는 여신지원 당일에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a)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b) 소

83) 형법에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성립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어느 요건(들)을 몰랐다 할지라도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출처: 위키피디아(Wikipedia).

84) 법 §113(1) 위반행위에 관하여 동법은 50 제재단위(penalty units)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 penalty unit은 170호주달러를 의미한다(Crimes Act 1914 §4AA).



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 맺고 있는 어느 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115(1)).<sup>85)</sup>

또한 피면허자는 지원일로부터 90일(또는 규정에 기간이 달리 규율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해당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 제공자와 일정한 여신계약을 맺고 있을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지원일 당일에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여신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법 §115(2)).<sup>86)</sup>

## 2. 공시서류의 제공 및 예비평가 의무

### (1) 공시서류의 제공의무

피면허자는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a)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 (b)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c)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 일정한 여신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안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121(2)에 따른 여신제안공시서류(credit proposal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121(1)).

---

85) 다만 피면허자가 여신지원일로부터 90일(또는 규정에 기간이 달리 규율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다음 (c) 내지 (d)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117(1)(c) 및 (d)).

(c) 다음에 관한 예비적인 평가를 한 경우- (i) 법 §116(1)을 준수하고, (ii) 평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해 예비평가가 행해졌을 것, 그리고

(d) 법 §117에 따라서 및 확인(verification)을 하였을 경우

86) 다만 다음 (a) 및 (b)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115(2)(a) 및 (b)).

(a) 다음의 예비평가를 하였을 것

(i) 해당 예비평가가 법 §116(2)를 준수하고 있으며 (ii) 평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해 예비평가가 행해졌을 것, 그리고

(b) 법 §117에 따라서 조사 및 확인을 하였을 것

## (2) 사본 제공의무

소비자가 법 §114에 따른 여신지원 건적일로부터 7년 이내에 예비평가물의 사본을 피면허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피면허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평가물의 서면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120(1)). 다만 피면허자가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예비평가물의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법 §120(1) 주석). 이 때 피면허자는 규정이 규율한(규율한 바가 있는 경우) 방법으로 그 평가물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법 §120(2)), 피면허자는 예비평가물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법 §120(3)).

이상의 법 §114(1) 또는 (3)을 위반하는 자는 엄격 책임의 위반(strict liability offence)으로서 50 제재단위의 형사제재를 받는다(§120(4) 및 (5))

## II. 대출의 적합성 판단

### 1. 규제지침의 개관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중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피면허자(part 3-1)」부분은 부적합한 여신계약의 제안 또는 지원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신피면허자는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책임있는 대출에 관한 의무 충족은 ① 해당 소비자의 재무상황 및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 ②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③ 해당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그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행한 조사 및 위 2단계 조치에서 얻어진 정보

에 기반하여) 예비평가<sup>87)</sup>또는 최종평가<sup>88)</sup>를 할 것이라는 3단계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규제지침은 책임 있는 대출의무에 관하여 여신지원제공자인 경우 및 여신제공자·리스업자인 경우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다(RG 209.5 및 RG 209.66). 책임 있는 대출의무에 의거하여 여신제공자등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그 소비자에게 ‘부적절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기 전에 최종평가(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일 경우) 또는 예비평가(여신지원제공자일 경우)를 할 의무가 있다(RG 209.66).

첫째, 여신지원제공자일 경우, ①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 ② 소비자가 기존 여신계약에 관한 여신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 ③ 소비자가 기존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유지하도록 제안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둘째, 여신제공자이거나 리스업자일 경우, ① 그 소비자와의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하는 행위, ② 기존 여신계약에 관한 여신한도를 증액하는 행위, ③ 어느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해당 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와 체결할 적격을 갖는다고 여긴다는 내용 또는 해당 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와의 기존 여신계약의 여신한도가 증액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조건적 의견표시를 소비자에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책임 있는 대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려면, 예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하기 전에 여신제공자등이 ①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와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 ②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예컨대, 해당 계

87) 여신평면허자가 여신지원을 제공할 경우

88) 여신평면허자가 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인 경우

약하의 소비자의 상환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③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RG 209.67).

책임 있는 대출의무는 단지 신규계약 체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하에서 여신한도 증액을 고려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기존 여신계약을 유지하거나 여신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RG 209.6).

여신지원제공자를 위한 제3장의 일반적 의무를 요약하면 <표-4>과 같고, <표-5>는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를 위한 제3장의 일반적 의무를 요약한 것이다(RG 209.10).

<표-4> 여신‘지원’제공자를 위한 책임 있는 대출의무의 핵심사항<sup>89)</sup>

여신지원제공자의 의무	의무의 간략한 개요
1.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입수된 정보를 확인하라	여신지원제공자는 어느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의 제안이 어느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한 예비평가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li> <li>· 해당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li> <li>· 해당 소비자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이행</li> <li>· 규정에 규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이 규율하는 조치의 이행(법 §117 및 §140)</li> </ul>
2. 조사에 입각하여, 제안된 여신계약이나 소비자	여신계약 또는 소비자리스의 제안은 예비평가 시점에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적합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해당 제안된 계약상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li> </ul>

89) Regulatory guide 209 pp.7-8, Table 1.

여신지원제공자의 의무	의무의 간략한 개요
<p>리스가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한 예비평가를 하라.</p>	<p>수 없을 경우 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된 계약이 소비자의 필요 또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li> <li>· 규정에 규율된 상황이 제안된 여신계약 또는 소비자리스에 적용될 경우: 법 §118(2), §119(2), §141(2) 및 §142(2)</li> </ul>
<p>3.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소비자에게 예비평가물의 서면 사본을 제공하라.</p>	<p>소비자가 예비평가물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여신지원제공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규율된 기한 내에 무료로 평가물의 서면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 §120 및 §143</p>

<표-5>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를 위한 책임 있는 대출의무의 핵심사항90)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가 이행할 의무	의무의 간략한 개요
<p>1.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입수된 정보를 확인하라</p>	<p>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가 어느 여신계약 또는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한 최종평가를 하기 전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li> <li>· 해당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li> </ul>

90) Regulatory guide 209 p.9, Table 2.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가 이행할 의무	의무의 간략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li> <li>· 규정이 규율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이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130 및 §153)</li> </ul>
<p>2. 조사에 입각하여,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한 최종평가를 하라.</p>	<p>여신계약 또는 소비자리스는 최종평가 시점에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적합한 것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계약상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없거나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li> <li>· 계약이 소비자의 필요 또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li> <li>· 규정에 규율된 상황이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적용되는 경우: 법 §131(1) 및 §154(2)</li> </ul>
<p>3.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소비자에게 그 최종평가물의 서면사본을 제공하라.</p>	<p>소비자가 최종평가물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규율된 기한 내에 무료로 그 평가물의 서면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 §132 및 §155</p>

## 2. 차입자의 상환능력 부적합 평가

### (1) 계약 체결전 상환능력 검토의무

책임 있는 대출의무에 관한 여신제공자등의 핵심의무는, 어느 여신 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할 경우에 해당 소비자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해당 소비자에게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제안’하지 않아야 하며 그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신청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RG 209.16).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역시 차입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피면허자는 여신계약의 부적합성(unsuitability)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116).

2013년 3월 1일부터, 여신제공자 겸 리스업자에 대하여도 어느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해당 여신제공자등과 체결할 자격이 있다거나 또는 기존 여신계약의 여신한도가 증액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의견표명(representation)을 소비자에게 하려면 그 전에 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의무를 진다(RG 209.17).

### (2) 상환능력에 관한 부적합 평가상황

#### 1) 예비평가의 경우

여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한 예비평가에서 여신계약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 §118(1) 및 §119(1)). 예비평가의 시점에 계약이 ①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재무적 의무를 충족할 수 없거나 상당한 어려움(substantial hardship)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② 해당 계약이 그 소비자의 필요 또는 목적을 만족시키

지 못할 경우, 또는 ③ 어느 여신계약이 부적합하다고 규정이 규율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은 그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법 §118(2) 및 §119(2)). 이 경우 부적합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여신계약상 자신의 재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준수할 수 있다면,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해당 소비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법 §118(3) 및 §119(3)).

## 2) 본평가의 경우

여신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피면허자가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시점에 ① 해당 소비자가 그 계약하에서 그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준수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을 경우, ② 그 계약이 소비자의 요구 또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③ 어느 여신계약이 부적합한 상황에 대하여 규정이 규율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한다(법 §123(2)). 이 경우 소비자가 여신계약상 자신의 재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준수할 수 있다면,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소비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된다(법 §123(3)).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부적합한 여신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안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바, 피면허자는 어느 여신계약이 법 §124(2)에 의할 때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할 경우 여신지원을 제공시에 해당 소비자가 특정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안하여서는 안 된다(법 §124(1)).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피면허자가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시점에 ① 그 소비자가 계약상의 자신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상당한 어려



움을 감내하여서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② 그 계약이 그 소비자의 필요 또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③ 규정이 어느 여신계약이 부적합한 상황을 규율할 경우, 그러한 상황이 그 계약이 적용될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여신계약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법 §124(2)).

이 경우 위 법 §124(2)(a)의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가 여신계약상 자신의 재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준수할 수 있다면,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소비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 의무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된다 (§124(3)).

### (3) 평가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적격

예비평가 또는 본평가 과정에서 여신계약의 ‘체결’,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여신계약의 부적합 판단을 위하여 이용될 정보로는, 일정한 적격을 갖는 정보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법 §118(4) 및 §119(4)).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적격정보란 ① 해당 정보가 소비자의 재무 상황, 필요 또는 목적, 기타 법 §117(1)(d) 또는 (e)에 의하여 규정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② 예비평가 또는 본평가 시점에 (i) 해당 피면허자가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거나, (ii) 해당 피면허자가 그 피면허자가 법 §117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행하였다면 그 정보가 진실임을 믿을 이유가 있었을 것 중 한가지가 만족될 것을 말한다(법 § 119(4), §123(4) 및 §124(4)).

### (4) 부적합 평가시의 법적효과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part 3-1, division 6는 부적합한 여신계약을 제안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신계약이 법 §123(2)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적합할 경우에는, 피면허자는 ① 어느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②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를 증액시킬 것을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법 §123(1)). §123(1)을 위반시에는 2,000 제재단위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되며, 형사제재로 100 제재단위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양형의 병과형에 처한다 (§123(6)).

다만 법 §125(1) 및 (6)에 관하여 ① 피면허자가 소비자가 여신계약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 이유가, 그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하지 않을 기타 다른 여신계약은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② 피면허자가 곤경에 처한(in hardship) 소비자를 위하여 전국여신법(National Credit Code)상의 관련 절차를 그에게 고지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항변(defence)이 가능하다(법 §125(7)).<sup>91)</sup>

### 3. 합리적인 조사·확인 의무

#### (1) 도입 : 합리적인 조사·확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여신지원제공자,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에게 (i) 여신계약 또는 소비자리스에 관련된 소비자의 필요 및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ii)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sup>92)</sup>,

91) 이 경우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위반자가 법 §125(7)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125(7) 주석).

92) 예컨대 해당 소비자가 고려중인 해당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따른 상환의무

(iii)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RG 209.18).

주어진 거래에 관한 책임있는 대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여신제공자등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RG 209.31 - RG 209.32에 열거된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고려사항이 된다(RG 209.28).

(2) 합리적인 조사 및 확인의무의 가변성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정보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동태적이므로, 여신제공자등이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RG 209.19).

아래 <표-6>은 가변성(scalability)의 개념에 관련된 몇몇 관련요소를 보이고 있다(RG 209.22).

<표-6> 합리적인 조사 및 확인 의무의 가변성에 관련된 요소들

관련 요소	의무에의 영향
부적합한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부적합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더 확장된 소비자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규모가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능력에 비하여 큰 규모일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소액대출일지라도 해당 소비자에게 재무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좀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를 충족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련 요소	의무에의 영향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의 복잡성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건 (terms)일 경우에는 덜 확장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더 확장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복잡한 조건을 갖는 경우이다.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이해할 능력	<p>다음 사항이 여신제공자들에게 명백할 경우,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에 관하여 좀더 조사하는 필요가 있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 및 그 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상환의무를 이해할 소비자의 능력이 제한적일 경우, 예컨대 소비자가 한정된 언어(영어)구사력을 갖는 경우</li> <li>· 소비자가 상충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li> <li>·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경우(또는 자신의 목적을 명백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li> <li>· 소비자의 목적과 소비자가 고려중인 상품 간에 명백한 부조화(mismatch)가 있는 경우</li> </ul>
소비자가 기존 고객 또는 새로운 고객인지 여부	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일 경우, 해당 소비자가 기존 고객이고 그 소비자에 대하여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규고객인 경우에 비하여 범위를 좁혀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합리적인 수준의 조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및 여신지원제공자를 위한 책임 있는 대출의무는 전국여신법의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나<sup>93)</sup>, 이들 기

93) 여신지원제공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임있는 대출조항은 제3장의 Pt 3-1(여신계약의 경우) 및 제3장 Pt 3-3(소비자리스의 경우)이다. 여신제공자를 위한 조항은 제

능적으로 구별되는 피면허자 그룹을 위한 책임 있는 대출의무조항 중 많은 부분이 동일하므로 RG 209는 가능한 경우에 일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RG 209.23).

다만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및 여신지원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르며(RG 209.24), 따라서 여신제공자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과 ‘합리적인 확인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RG 209.25). 또한 합리적인 조사와 확인의무에 관한 법 준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공서비스의 성격, 즉 서비스제공자가 여신제공자인지 리스업자인지 또는 여신지원제공자인지 여부도 포함된다(RG 209.26).

<사례> 제공서비스별 가변성

여신평면허자가 소비자에게 채무 정리 서비스(debt consolid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가 현행 부채상황을 리뷰하고 이들 부채가 가장 잘 조정되는 방법에 관하여라면,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조사와 확인을 행할 것이 기대된다. 즉, 피면허자는 해당 소비자의 기존 계약조건 및 현행 부채를 정리하는 해당 소비자의 목적에 관하여 좀더 세밀한 조사를 행할 것이 기대되며, 신규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해당 소비자의 목적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가변성

여신제공자가 여신리ports를 획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나, 이는 여신지원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RG 209.27).

---

3장 Pt 3-2이고 리스업자를 위한 조항은 제3장 Pt 3-4이다(RG 209.23 주석).

(4)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RG 209.31).

- (a) 소비자의 수입이나 수당(benefits)에 관한 현행 수입액 및 수입원천 (예컨대, 전일근무, 파트타임 또는 임시고용직(casual employee) 또는 자기사업 등과 같은 고용의 성격 및 기간의 포함 등)
- (b) 소비자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예컨대 임차비용, 기존채무의 상환금액, 자녀 지원비용, 보험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범위
- (c) 소비자의 변동비용 (그리고 부양가족(dependants) 및 특정 상황이나 비 일상적 상황에 따른 변동비용의 요인들)
- (d) 소비자가 재량껏 쓰는 지출비 (예컨대 여가비(entertainment), 테이크아웃음식(take-away food), 담배 및 도박)
- (e) 선불받은(advanced) 여신액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환정도
- (f) 소비자가 돈을 빌린 이력 (해당 소비자가 직전 90일 기간 동안 채무자였던 소액여신계약의 숫자 및 그 계약하에서 해당 소비자가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적은 없는지를 포함하여)
- (g) 소비자의 연령(특히 이들이 청소년일 경우) 및 식구들의 수를 포함하여, 해당 소비자의 상황
- (h) 자산의 성격(해당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같은)을 포함하는 소비자의 자산의 성격 및 해당 자산의 가치(RG 209.89 - RG 209.90를 보라)
- (i) 소비자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중요한 변화(예컨대 ‘특전(honeymoon)’ 이자율 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예견가능한 이자율의 변경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상환의무의 변경, 또는 계절적 고용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해당 소비자의 고용상태의 변경, (퇴직연금 또는 소득창출재산 등을 통한) 은퇴이후의 생활비를 창출할 계획.
- (j) 원격지와 같이, 일정한 이슈(예컨대 도시지역에 비교하여 잠재적으로 더 높은 생활비용)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는 지리적 요소

(k) (배우자로부터의 소득과 같은) 간접적인 소득원천으로서, 소득을 창출하는 자와의 관계 이력(history) 또는 상환의무 이행에 관한 해당 소득 창출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고려할 경우에, 해당 소득이 그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가용한 경우

### (5) 소비자의 필요 및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 및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RG 209.32).

- (a) 필요한 여신의 액수 또는 대출받으려는 여신의 최대금액(예컨대, 신용카드의 회망 사용한도)
- (b) 여신 또는 소비자리스를 필요로 하는 기간(timeframe)
- (c) 여신 또는 소비자리스를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소비자가 얻는 이익(benefit)
- (d)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특질(features)이나 유연성(flexibility), 그 소비자에 관한 다른 특질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구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가 이들 특질에 연관된 추가적인 비용이나 위험을 모두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e) 여신이나 소비자리스에 관한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대출 금액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이러한 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을 대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

신용카드 관련 여신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제한적이게 된다(RG 209.33). 그러나 소비자가 해당 신용카드에 관하여 요구하는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은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에 관련되는 상품의 핵심 특질이므로 사용한도액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G 209.33).

(6) 합리적인 조사가 수행되었는지의 확인절차

여신제공자 등은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두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여신제공자등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책임 있는 대출의무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된다(RG 209.34).

1) 여신제공자등의 사업모델 및 그가 행하는 여신활동의 유형에 적합한 절차일 것

여신제공자 등이 마련한 감독 및 준수 절차는 그 사업모델 및 여신 활동에 따라서 고안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신제공자 등이 수개의 별도 지역에서 피고용인을 쓰고 있는 경우, 그 여신제공자등은 해당 피고용인들이 적절하게 감독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RG 209.35).

또한 여신이나 소비자리스를 어느 소비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신신청 및 행동점수시스템(credit application and behavioural scoring systems)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시스템은 소비자가 여신계약상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 능력(즉, 해당 계약에 따른 지불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RG 209.36). 즉, 소비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은 측정하지만 그 소비자의 지불의무를 충족시킬 능력은 측정하지 않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경우 그러한 시스템을 두는 것으로는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RG 209.37).

2) 이용채널의 다양성과 적합한 절차의 가변성

여신제공자등이 이용하는 채널(대면신청 또는 인터넷신청의 접수)에 따라 책임있는 대출의무의 준수를 위한 절차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RG 209.38). 여신제공자 등이 그의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충족



하기 위하여 행할 필요가 있는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RG 209.38).

(7) 소비자 재무상황에 관한 확인의무

1) 소비자 재무상황의 확인을 위한 조치의무

여신제공자 등은 소비자의 재무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무엇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해당되는지는 일반적으로 동태적이며, 무엇이 합리적인 확인에 해당하는지는 여신제공자등이 접근권을 갖는 정보와 정보원천(resources) 및 각 경우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신제공자와 리스업자는 일반적으로 여신지원제공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보에의 접근권(예컨대 신용리포트, 기존 고객에 관한 회계 정보를 통한)을 갖는 반면, 여신지원제공자가 여신제공자나 리스업자에게 가용한 일부 정보에의 접근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sup>94)</sup>

<표-7> 소비자의 재무상황 확인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정보 유형

소비자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 주체
피고용인을 위하여	최근의 급여 영수증/지급슬립 해당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다는 확인서	여신 ‘지원’ 제공자, 여신제공자 및 리스 업자
자기 사업을 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사업은행계좌명세서(business bank account statements)	여신 ‘지원’ 제공자, 여신제공자 및 리스 업자

94) 예컨대 일정한 상황에서 여신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고서도 그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G 209.43). 예컨대 은행은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예탁되는 봉급액수, 신용카드 지급의 시기, 기타 비용의 지불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소비자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 주체
	최근소득세환급액 소비자의 회계사가 해당 소비자의 재무상태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보고서(statement) 영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모든 소비자를 위하여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다른 여신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보고서 (1988년 Privacy At의 요건에 따를 것) 해당 여신제공자가 보유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기록 및 기존 고객에 관하여 보유한 기타 정보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  소액의 여신계약에 관하여는 여신지원 제공자 및 여신제공자가 해당된다.

2) 소비자가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와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i)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신제공자등이 그 소비자에 관하여 보유한 다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sup>95)</sup> 또는 (ii)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 소비자에 관하여 표준적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경우<sup>96)</sup>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정보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소비자에 관한 추가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RG 209.45).<sup>97)</sup>

95) 예컨대 기존 고객에 관한 신용보고서 등과 상이한 경우

96) 예컨대 진술한 소득이 그 소비자가 행하는 일의 종류에 대해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경우 또는 지출비용이 관련 벤치마크가 가리키는 것에 의할 때에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

97) 예컨대 매달 6천 달러의 소득이 있는 풀타임 학생의 여신신청의 경우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하며(RG 209.46), 여신평가에 의존하는 정보가 현재 버전(up-to-date)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G 209.47).

3) 여신지원제공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한 정보와 여신제공자·리스업자의 확인의무

여신제공자와 리스업자는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조사와 확인의무를 수행할 의무 역시 진다(RG 209.50). 합리적이며 신중한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는 제3자가 수집한 정보(예비평가에서 얻어진 정보도 포함)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RG 209.50).

만일 여신제공자와 리스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RG 209.51).

4. 소비자의 상환능력 구비여부의 평가

(1) 도입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획득하고 확인한 정보에 기반하여, 여신제공자등은 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부적합하지 않은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는 그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 없이 그 계약상의 채무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즉, 그 소비자가 그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갖는지)의 평가도 포함된다(RG 209.76).

여신계약(또는 여신한도의 증액)이나 소비자리스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평가시점에 해당 소비자가 (a) 그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b)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이다(RG 209.77).

소비자가 그 상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평가에는, 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기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최대가능금액(수수료를 포함)이 고려되어야 한다(RG 209.78).

<사례> 신용카드와 관련된 상환능력

신용카드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월별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기하여서만 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소비자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최초의 월별 상환금액만을 지급하여서만 해당 소비자가 그 카드의 최대한도를 상환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여신피면허자는 이것이 해당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즉,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상환하는데에 수년이 걸리며 이 채무에 대해 높은 이자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

(2) 상당한 어려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해당 소비자에게 상당한 어려움<sup>98)</sup>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획득된 재무적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 다음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RG 209.82).

- (a) 세후 소득으로부터 생활비를 차감한 이후에 남는 잔액으로서 소비자가 갖게 될 금액
- (b) 소비자의 소득 원천
- (c) 소비자의 소득이 얼마나 일관적이며 믿을만한지(그리고 지불할 액수가 소득수준에 상응하는지)
- (d) 소비자의 지출수준이 평균[지출]보다 상당정도 더 높을 가능성
- (e) 소비자의 기타 채무 상환의무 등
- (f) 소비자의 가처분소득과 상환간에 얼마나 완충지대가 있는지(예컨대 소

98) ‘상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전국여신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규제지침은 확정문구(definitive formulation)를 제안하지 않는다(RG 209.80).

비자들이 이자율 상승이나 ‘특전’이자율 제공기간 종료 후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  
(g) 소비자가 상환의무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반대상황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채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RG 209.84). ① 소비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여서만 채무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② 계약이 소액여신계약이면서 (i) 평가시점에 소비자가 다른 소액여신계약상의 채무자이면서 그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ii) 평가의 90일 이전에, 소비자가 둘 이상의 소액여신계약을 통한 차입자인 경우이다(RG 209.84).

(3) 소득으로부터 상환의무를 충족할 것

1) 소득에 기한 상환의무 이행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산에 관한 순가치(equity)가 아니라 원칙적으로<sup>99)</sup> 소득으로부터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RG 209.89).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상의 채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매각하여서만 이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소비자는 다른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한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이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전국여신법상 추정된다.<sup>100)</sup> 즉 소비자가 집을 팔아서만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establish하는 경우에는,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또는 여신지원제공자에게로 해당 여신계약이 ‘부적합하지 않다’는 증명책임(onus)이 전환된다(RG 209.90).

99)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예컨대 브리짓론이나 역모기지 등)

100) 전국여신법 §118(3), §131(3), §142(3) 및 §156(3).

2) 소득 외의 원천에 의한 상환의무 이행

현행 소득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RG 209.92).

<사례>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상환

65세의 남성 소비자는 보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공정기간 대출을 신청하였다. 현재 그는 전일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는 일 년 이내에 은퇴할 의도이다. 그의 재무적 상황은 그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금융중개인이 행한 예비조사에서 그는 그의 퇴직연금이 해당 대출계약상의 상환의무는 물론 그의 지속적인 재무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주거를 팔고 주거의 규모를 줄이는 장래의 계획

어느 여성소비자는 새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5년간의 원금 및 이자부 주택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그녀는 고용되어 있으며 해당 대출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충족시킬 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55세이며 65세에 은퇴할 계획이나 은퇴후의 소득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일견 이 대출은 그녀에게 부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차입자가 행한, 그녀의 필요와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 그녀는 재무상황에서의 미래의 변화, 즉 더 이상 상환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주택을 팔고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그녀가 현재 구매하려는 집은 향후 매각 전에 가치가 상승할 잠재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소비자의 표명된 의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주택매각시점에 남은 대출잔액을 쉽게 갚을 수 있다면, 해당 대출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소액여신계약 - 상당한 어려움의 추정

소액여신계약의 경우, (a) 평가시점에 소비자가 다른 소액여신계약상의 채무자이며 그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상환능력 평가의 90일 이전에 소비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소액여신계약을 통하여 차입한 다중 채무자일 경우에는,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한,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이 소액여신계약상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추정된다(RG 209.93).

이 추정의 효과는 이들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반대사실의 증명책임이 해당 여신평면허자에게 전환된다는 것이며, 만일 여신평면허자가 이하의 항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그 계약이 부적합할 것이며 부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b) 여신평면허자가 소액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평면을 제공하거나 그 소비자와 소액여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RG 209.94). 이 추정의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가 평가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의 불이행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RG 209.95).

(5) 상환할 능력 및 상당한 어려움의 예

다음은 상환능력 및 상당한 어려움에 관한 몇 가지 사례이다(RG 209.100).

<사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가족에 대한 지출비용

여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될 때에, 여신평면허자는 그 소비자의 생활비용을 충족할 현실적인 가족생활비용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여신계약상 진행되는 상환액(그리고 기타 다른 상환액 및 정기적인 재무적 지출약정을 포함)을 차감한 이후 소득으로부터 이들 생활비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 미만에서는 피면허자는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상황고려 없이 해당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 없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리파이낸싱

소비자가 어느 여신계약상 기존의 채무적 의무를 현재 준수할 수 없는 경우(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여신피면허자는 상당한 어려움 없이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여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소비자의 채무를 리파이낸싱해줄 수 있다.

<사례> 일시상환(balloon repayments)

대출기간 종료시점에 ‘일시(balloon)’에 다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그 여신계약상의 정기적인 상환의무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은 소비자가 최종적인 거액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5.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 충족성의 평가

- (1)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의 평가에 관련된 요소들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계약은 부적합하므로, 여신지원제공자, 여신제공자 또는 리스업자는 어느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그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RG 209.101).

그런데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몇몇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RG 209.104).

- (a) 소비자가 요청한 여신의 성격 및 소비자가 여신을 얻고자 진술한 목적
- (b) 소비자가 하나 이상의 필요 또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에 있어서 각각의 목적에 관한 상대적 중요성<sup>101)</sup>

101) 예컨대, 그 소비자에게는 그 여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지, 또는 이



- (c) 여신이 특정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신청될 경우에는, 그 자산이 사용될 내구연한에 관련된 여신의 조건
- (d)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 및 요금
- (e) 제안된 계약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
- (f) 소비자리스를 위하여, 해당 소비자가 계약 이후에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게 될 것임을 알게 되는지 여부
- (g)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의 복잡성 및 좀더 기본적인 상품이 그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
- (h)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관한 보험료와 같은 기타 비용도 대출될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들 추가비용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지 여부
- (i) 소비자가 계약상의 대규모 최종 지급의무에 대해 대출을 필요로 할지의 여부
- (j) 전환(switching)과 관련하여 신규 여신계약에 관한 전환이 그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범위

(2) 여신제공자 등이 제안하는 여신계약들 중 어느 것도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조치

여신제공자 등이 제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 중 어느 것도 주어진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 이들 계약이 모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소비자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하여서도 안 되며, 그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할 적격을 갖는지에 관한 무조건적인 의견표시를 하여서도 안 되며, 그 소비자에게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제안하거나 그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서도 안 된다(RG 209.105).

---

후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중요한지 여부 등을 말한다.

(3)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한 예

다음은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이다(RG 209.106).

<사례> 단기 금융(short-term finance)

비용청구서(bills)를 상환하는 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모기지브로커에게 전화연락한 경우, 그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기예금(term deposit)의 만기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모기지 브로커가 그 소비자의 집에 관한 순자산가치(equity)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제안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의 재무적 어려움이 명백하게 단기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대출실행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그 소비자가 그 정기예금을 조기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사례> 소비자리스

소비자가 여신피면허자에게 연락하여 가정 백색가전제품을 사는데 드는 돈을 마련하고 싶다고 한다. 해당 피면허자는 그 소비자가 소비자리스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소비자리스는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리스기간 종료 즈음에 해당 소비자는 그 백색가전제품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리스가 부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면허자는 해당 소비자가 그 계약 종료 즈음에 해당 가전제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비자의 의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전환(switching) 및 리파이낸싱(refinancing)의 경우

1) 비용절감 효과 및 필요와 목적 분석

여신제공자등이 계약전환 및 리파이낸싱 행위를 할 경우에 부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a) 새로운 여신계약이 소비자에게 야기되는 모든 손실을 초월하여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있을 경우인지, 또는 (b)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더라도 새로운 여신계약이 과연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을 더 잘 충족할지 등의 고려가 포함된다(RG 209.107). 소비자에게 전반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의 결정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려대상에는 대체비용(변환 또는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sup>102)</sup> 및 모든 관련 수수료와 기타 요금이 포함된다(RG 209.108).

2) 소비자가 체불 중인(in arrears) 경우의 리파이낸싱

소비자가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에 여신제공자등이 수행하여야 할 조사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소비자가 해당 상환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존의 여신계약에 관하여 체불상태인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소비자가 그 계약상 부과될 채무금액의 상환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환할 액수가 동일수준 또는 유사수준일 경우 리파이낸싱계약은 부적합할 것이다(RG 209.110). 소비자가 소액 여신계약에 관하여 체불중인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더 많이 리파이낸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의 추정이 발동될 수 있다(RG 209.111).

---

102) 여신지원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리파이낸싱과 관련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RG 209.108).

<표-8> 서류에 관한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 제3장의 의무(일부요약)

서 류	의무의 적용주체	의무에 대한 간략한 개관
여신 지침 (credit guide)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여신지원 제공자 및 여신대리점 (credit representatives) <sup>103)</sup>	<p>여신지원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해당 여신지원제공자에게 명백하게 된 경우 실행가능한 한 빨리 그 소비자에게 여신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113(1) 및 §136).</p> <p>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는 소비자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해당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에게 명백하게 된 경우 실행가능한 한 빨리 그 소비자에게 여신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126(1) 및 §149)</p> <p>여신대리점은 그가 대리하는 피면허자의 여신지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소비자에게 여신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158).</p>
여신지원 제공을 위한 견적 (quote)	여신지원 제공자	<p>여신지원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견적을 제공하여 그 소비자가 그 견적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기 전에는(또는 기타방식으로 소비자가 그 견적을 승인하였음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114(1) 및 §137).</p>
여신 또는 리스의 제안에 관한 공시 서류	여신지원 제공자	<p>여신지원제공자는 여신지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소비자에게 여신 또는 리스 제안 공시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121 및 §144).</p>

103) 여신대표자(credit representatives)는 여신피면허자를 대신하여 특정 여신행위를 할 면허(license)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소지한 면허로 활동가능한 행위의 전부·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여신제공자 이외의 활동에 참여할 인가를 받은 피면허자는 자신의 여신대표자가 여신 제공행위가 아닌 이외의 활동에 참여

서 류	의무의 적용주체	의무에 대한 간략한 개관
여신 계약 등이 ‘부적합하지 않다’는 서면 예비 평가/최종 평가	여신 제공자 및 여신 지원 제공자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 여신지원제공자는 그 소비자에게 예비평가물의 서면사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는 그 소비자에게 최종평가물의 서면사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 카드 계약을 위한 핵심사실지	여신 제공자	신용카드계약에 관한 신청서 서식에는 핵심사실지가 포함되어야 한다(§133BC).

## 6. 금리 및 수수료 관련 규제

### (1) 금리 산정의 규제

호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하는 금리 상한의 규제는 없으며, 다만 몇개 주에서 금리상한 규제를 두고 있다. 예컨대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경우 ‘Credit(Commonwealth Powers) Act 2010’은 여신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이자,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최고한도를 48%로 규정하며, 뉴사우스웨일즈 주, 빅토리아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역시 퀸즐랜드 주와 마찬가지로 48%의 최고한도를 두고 있다.<sup>104)</sup> 빅토리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출처: <http://www.asic.gov.au/asic/ASIC.NSF/byHeadline/Credit%20representatives>.

104) The Dominion Post (internet news), “Failure to cap interest rates undermines law,” (June 6, 2012), 출처: <http://www.stuff.co.nz/dominion-post/comment/7046419/Failure-to-cap-interest-rates-undermines-law>

주의 경우 이자율규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미담보채권에 대해서는 48%를,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30%의 한도를 두고 있다.<sup>105)</sup> 호주에서는 일부 주에서 금리상한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 호주의 금리상한규제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 (2) 수수료 관련 규제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중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피면허자(part 3-1)」부분 중 division 5는 여신계약에 관련된 수수료, 커미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1) 여신제안공시서류를 통한 공시의무

피면허자는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신제안공시서류(credit proposal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법 §121(1)), 여신제안공시서류는 ① 해당 소비자가 그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피면허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 및 그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 ② 피면허자 또는 피고용인, 그 피면허자의 이사 또는 여신대리점이 해당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커미션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및 그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 ③ 소비자가 해당 여신계약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여신제공자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④ 여신계약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가 기타 다른 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⑤ 위 ① 내지 ④ 항목에 있는 어느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위 ①, ③ 및 ④가 지불되고 난 이후에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가능한 여신의 가능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를 포함하여야 한다(§121(2)).

---

105) 앞의 인터넷뉴스.

2)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은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면허자가 그 소비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에게 금액(제3자 지급금 ; the third party amount)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면허자는 제3자 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 제3자 지급금의 상환용으로 지급을 요청·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법 §122(1)). 만일 법 §122(1)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제재<sup>106)</sup>를 받는다(법 §122(2)).

---

106) 25 제재단위 또는 6월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을 받는다.

## 제 6 장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쟁점별 비교

### 제 1 절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의 구체화

#### I. EU의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

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설명의무의 이행은 올바른 신용대출시장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여신지침’을 통해서도 소비자가 계약에 따르는 각종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용조건 및 비용, 본인의 의무, 상품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연리(APR)를 계산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여신계약 체결 이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정보에는 금리, 상환제도, 인출제도, 분할상환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상품의 정확한 내용과 지급불이행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재정상황에 부합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서 기반한다.

한편, 보증인은 ‘소비자여신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여신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공여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유럽국가들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여신공여자의 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인 항목을 정한 것이다.<sup>107)</sup>

---

107) 김희철, 앞의 자료집, 45면.



## II. 영국의 설명의무 이행 및 정보제공의무

### 1. 설명의무의 이행

영국 소비자여신법은 여신업자(creditor)에 대하여 차입자와 여신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차입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설명(adequate explanation)을 제공하도록 한다(법 §55A(1)(a)). 이는 해당 여신계약이 그 차입자의 필요와 재무적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여신법은 (i) 60,26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 (ii) 토지를 담보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법 §55A(6)).

또한 소비자여신법은 여신업자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차입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법 §55A(1)(b)), 차입자가 그 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심층정보 및 설명을 여신업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입자에게 자문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법 §55A(1)(c) 및 (d)), 단순히 형식적인 상품소개서만을 제시하거나 차입자가 질문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영국 공정거래청이 제정한 관련 지침은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여신업자가 다음 행위를 하도록 한다(지침 3.1). 다만 영국법상 여신중개업자(credit intermediary)가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55A(1)의 설명의무는 여신업자(creditor)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차입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 해당 계약이 차입자 자신 필요와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

- 차입자에게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참고하도록 조언하고, 정보가 개별적으로 그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그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
- 차입자에게 그 계약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
- 차입자가 여신업자에게 심층정보와 설명을 요구할 방법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설명할 사항

소비자여신법상 계약 체결전에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55A(2)). 이와 관련하여 지침 역시 규정을 두고 있다(지침 3.2).

- (i) 계약에서 제공된 여신이 특정 유형의 이용에는 부적합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징
- (ii) 차입자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상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하의 전체부채의 금액
- (iii) 차입자가 예견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상당한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징
- (iv) 차입자가 계약상 요구되는 시점에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입자에게 미치는 주된 결과(소송절차를 포함) 및 차입자 주택의 재점유(repossession)이 있다는 것
- (v) 해당 계약을 철회할 권리의 행사의 효과 및 이러한 권리의 행사시점과 행사방법

나아가, 소비자여신계약의 체결 전에 여신업자는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차입자에게 성립될 예정인 소비자여신계약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법 §55C(1)).

### 3. 설명제공의 정도

설명제공의 정도와 관련하여, 영국 공정거래청은 여신업자가 차입자에게 여신상품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비례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며, 설명은 차입자가 해당 여신에 관한 상환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핵심적인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지침 3.3). 이에 따르면 설명의 제공 수준은 차입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개별 차입자의 여신계약상 상환의무의 감당 가능성 및 핵심위험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공되어야 할 설명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신업자, 대표자, 대리인 또는 ‘관련된 제3자’는 여신상품의 유형, 차입자가 부담하게 될 관련비용 및 위험수준, 차입자의 설명이해수준, 여신거래의 채널 등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으로써(지침 3.4),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는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될 사항이라고 접근하는 태도로 보인다.

- 추구되는 여신의 유형
- 제공되는 여신의 양 및 관련비용 및 차입자가 지는 위험
- 제공되는 설명에 관한 차입자의 이해수준
- 여신거래가 발생하는 채널/매개체

영국 지침은 계약 체결 전에 차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한 항목을 제시함으로써(지침 3.13),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a) 추구하는 여신이 특정유형의 이용에는 부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질(해당할 경우)

- b) 차입자가 해당 계약하에서 지불할 금액
  - 계약상 지불할 금액의 총액(총액 결정 가부) 및
  - 상환기간별 상환액의 규모 및 재상환 횟수와 빈도
- c)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차입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효과
  - 부채증가의 전체비용
  - 발생할 위약금 및 이자(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훼손된 여신등급으로 인하여 신용이 좀더 곤란해지며 장래에 더 많은 비용소요를 초래한다는 것
  - 법적 절차(법원 소송 및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 파산의 신청, 기타 매각신청 등
  - 차입자의 주택 등 자산의 금융회사에 의한 재점유
  - 유질계약에 있어서 담보물로 채무액이 별충되지 않는 경우에 매각될 담보물
- d) 계약 철회권의 존재, 행사효과, 행사시기 및 행사방법
- e) 차입자가 예견불가한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중대한 역효과를 미치게 될 수 있는 계약의 특질

### Ⅲ. 호주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호주의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은 여신지원의 제공 전에 여신지원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일환으로 여신지침 제공 및 공시서류 제공의무를 두고 있다.

#### 1. 피면허자의 여신지침 제공의무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 제3장 part 3-1, division 2의 대표적인 규율을 살펴보면, 여신지원제공자의 여신지침(credit guide)과 관련하여 어느 소비자와 여신계약에 관한 여신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해당 피면허자에게 명백하게 되면 그 직후 해당 피면허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2)에 따라서 피면허자의 여신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법 §113(1)).

이 경우 피면허자의 여신지침에는 피면허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이 규율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함은 물론, 이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는 해당 여신지원을 위하여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모든 수수료(fee)와 모든 요금(charges) 및 이들 수수료와 요금의 산정방법, 피면허자 또는 그 고용인, 해당 피면허자의 이사 또는 여신대리점(credit representative)은 해당 피면허자가 여신지원을 제공한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모든 커미션(commissions) 및 그 액수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 금액 및 계산방법,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면허자의 내부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물론 해당 피면허자가 구성원인 승인된 외부 분쟁해결기구(scheme)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계약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피면허자의 절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법 §113(2)).

만일 법 §113(1)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sup>108)</sup>의 위반이 되며 형사제재<sup>109)</sup>를 받는다(법 §113(5) 및 (6)).

## 2. 공시서류의 제공의무

여신지원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여신계약의 신청 등을 제안·지원할 경우에는 그는 해당 소비자에게 여신제안공시서류(credit proposal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121(1)). 구체적으로 여신제안공시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a)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행

---

108) 형법에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성립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어느 요건(들)을 몰랐다 할지라도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출처: 위키피디아(Wikipedia).

109) 법 §113(1) 위반행위에 관하여 동법은 50 제재단위(penalty units)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 penalty unit은 170호주달러를 의미한다(Crimes Act 1914 §4AA).

위, (b)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제안하거나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c)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 일정한 여신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안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법 §121(1)).

이러한 여신제안공시서류는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121(2)).

- (a) 해당 소비자가 그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피면허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 및 그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
- (b) 피면허자 또는 피고용인, 그 피면허자의 이사 또는 여신대리점이 해당 여신계약과 관련하여 수수할 수 있는 커미션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및 그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
- (c) 소비자가 해당 여신계약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여신제공자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 (d) 여신계약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가 기타 다른 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총액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 (e) 이상의 항목 중의 어느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위 (a), (c) 및 (d)가 행해진 지불 이후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여신의 가능한 액수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치

#### IV. 소 결

약탈적 대출 관련한 소비자보호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이나 가격, 수반되는 권리의무, 본인의 재정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고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계약의 불공정·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약의 기본적인 법원이 되는 「민법」에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분야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한 예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신고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체결시에 법정사항<sup>110)</sup>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서명하도록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부업자에게 계약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금융회사의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불공정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유사하다.

다만 동법(안)의 규제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종전의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대출행위를 주된 또는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는 금융회사 대부분을 포괄하여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법안내용을 보면 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현행 「대부업법」과 차이가 없어서(법(안) 제4조제2항 및 제5항) 집행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를 남기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금융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설명의무의 이행정도, 그리고 설명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할지 등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아니하다.

---

110)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포함),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연체이자율 등(대부업법 제6조제1항).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 경우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그 판매 등을 규제하되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누고, 이 중 대출성상품의 경우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 상품내용을 해당 대출성금융상품에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법(안) 제21조제1항) 설명의무의 내용을 좀 더 상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법(안) 제23조).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공정하게 전달할 의무를 지우며(법(안) 제24조제2항), 그 광고에는 일정한 사항<sup>111)</sup>을 포함하도록 하고(법(안) 제24조제3항), 대출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요인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법(안) 제24조제4항제4호).

앞서 살펴 본 EU, 영국, 호주의 소비자신용대출에 관해서는 모두 정보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 여신계약 관련 법률들과 이후에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I. EU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대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 검토라 할 수 있다. EU에서도 대출의 적정성 판단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CCD 제8조), 신용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용도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신용평가기

111) 대출성상품의 경우 거래조건 등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다(법(안) 제24조제3항제6호).



관을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공여를 거절하게 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CCD 제9조).

한편, 과대부채의 문제는 지급불능사태의 발생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도록 하고, 계약불이행의 방지를 위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상환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APR의 변동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APR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6조에서 연이자율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공식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9조 및 별첨I), APR이 금융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확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공식은 일부 예외항목이 있더라도 통일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금융상품간의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기준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2)</sup>

## II. 영국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 계약 체결 · 증액 · 한도증가시 상환능력의 검토의무

영국의 1974년 소비자여신법에 의하면, 동법의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의 경우에는, (i)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신업자는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상환능력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법 §55B(1)). 나아가 여신업자는 (ii) 소비자여신계약상 제공되어야 할 여신금액을 상당정도 (significantly) ‘증액’시키기 전에, 또는 (iii) 규제대상인 소비자여신계약상 당좌계정 여신에 관한 여신‘한도’를 상당정도 증가시키기 전에도, 차입자의 신용도 평가를 할 의무를 진다(법 §55B(2))고 하여,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여신금액의 증액과 여신한도의 증가의 경우에도 상환능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112) 김희철, 앞의 자료, 48면.

이 경우 신용도 평가는 (i) 차입자(적절할 경우) 및 (ii) 신용조회기관(필요할 경우)로부터 획득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야 한다(법 §55B(3)).

## 2. 상환능력의 평가에 관한 원칙 제시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의 평가(assessing affordability)는 특정 여신약정이나 특정한 부가 여신약정을, 해당 차입자에게 (그이상의) 재무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도록 함이 없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수할 차입자의 능력을 여신업자가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차입자 중심 테스트(borrow-focussed test)’라고 제시한다(지침 4.1).

영국 공정거래청이 제시하는 차입자 중심 테스트의 핵심 문구는 (i) 차입자가 그 여신계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ii) 차입자가 부당한 어려움 없이 상환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지침 4.3 및 4.4).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예로는 부채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은 해당 여신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측정되고, 담보나 자산을 처분할 필요 없이 소득 및/또는 가용가능한 저축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여야 한다(지침 4.3).

또한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의 예로는 (여신 허여시점에 합리적으로 예견불가능한 개인적인 상황변경이 없는 경우에) 차입자가 다른 채무 상환의무 및 기타 통상적·합리적인 지출액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들 상환의무를 이행하고자 더 많이 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지침 4.4)

## 3. 상환능력 평가의 고려요소

나아가 지침은 일반적인 특정 상황에서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원칙을 정하고(평가 범위와 정보는 여러 요소에 의존하고 해당 요소들에

상응하여야 한다),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지침 4.10). 그러한 고려 요소로는, 여신상품의 유형,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여신금액 및 관련 비용과 위험, 여신 추구 즈음의 차입자의 재무 상황, 차입자의 여신이력, 차입자의 기존 및 장래 재무적 약정, 차입자의 개인적 상황의 장래 변화의 영향, 차입자의 취약성 등을 들고 있다(지침 4.10)

특히 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관련 고려사항으로, 여신계약의 상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의 실제소득은 물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소득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지침 4.13). 예컨대, 평가 시점에 차입자의 보조소득 수입이 있을 경우 그 보조소득에 관한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소득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령될 것으로(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수령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지침 4.13).

### Ⅲ. 호주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 1. 계약 체결·증액·한도증가시 상환능력의 검토의무

호주의 경우에도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에 의하여, 여신계약의 ‘체결’,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각각 해당 계약이 차입자에게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법 §118(4) 및 §119(4)). 이 경우 판단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i) 해당 정보가 소비자의 재무상황, 필요 또는 목적 등에 관한 것이고, (ii) 예비평가/본평가 시점에 해당 피면허자가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거나 해당 피면허자가 그 피면허자가 조사·평가를 수행하였더라면 그 정보가 진실임을 믿을 이유가 있었을 정보이어야 한다.

만일 어느 여신계약이 소비자에게 부적합할 경우에는, 피면허자는 (a) 어느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을 신청하

도록 제안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신청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b) 소비자가 특정한 여신제공자와의 일정한 여신계약상의 여신한도를 증액시킬 것을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여신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법 §123(1)).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제재금 외에도 형사제재금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123(6)) 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2. 상환능력의 평가에 관한 원칙 제시

전국소비자여신보호법상 여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여신한도의 ‘증액’, 또는 여신계약의 ‘유지’와 관련한 예비평가 내지 본평가에서 여신계약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 §118(1) 및 §119(1)). 예비평가 내지 본평가의 시점에 계약이 (a)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재무적 의무를 충족할 수 없거나 상당한 어려움(substantial hardship)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b) 해당 계약이 그 소비자의 필요 또는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c) 어느 여신계약이 부적합하다고 규정이 규율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은 그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법 §118(2), §119(2), §123(3) 및 §124(2)). 이 경우 부적합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여신계약상 자신의 재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준수할 수 있다면,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해당 소비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법 §118(3), §119(3), §123(3) 및 §124(3)).

## 3. 상환능력의 평가의무 이행과 합리적인 조사·확인 절차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여신지원제공자, 여신제공자 및 리스업자는 (i) 여신계약 또는 소비

자리스에 관련된 소비자의 필요 및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ii)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또한 소비자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G 209.18).

이 경우 무엇이 ‘합리적인’ 조사·확인 의무의 수행인지에 대하여 규제지침이 구체적인 조사대상사항을 규율하고 있고(RG 209.31 - RG 209.32에 열거된 내용), 실제적으로는 이들 사항에 관하여 여신업자들이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고려사항이 된다(RG 209.28).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재무상황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RG 209.31).

- (a) 소비자의 수입이나 수당(benefits)에 관한 현행 수입액 및 수입원천
- (b) 임차비용, 자녀지원액 등 소비자가 지출하는 고정비용
- (c) 비일상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하는 변동비용
- (d) 여가비 등 소비자가 재량껏 쓰는 지출비
- (e) 선불받은(advanced) 여신액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환정도
- (f) 소비자가 돈을 빌린 이력
- (g) 소비자의 연령 및 부양가족의 수 등, 소비자의 상황
- (h) 소비자의 보유자산의 성격 및 해당 자산의 가치
- (i) 소비자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중요한 변화(예컨대 ‘특전(honeymoon)’ 이자율 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예견가능한 이자율의 변경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상환의무의 변경, 또는 계절적 고용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해당 소비자의 고용상태의 변경, (퇴직연금 또는 소득창출재산 등을 통한) 은퇴이후의 생활비를 창출할 계획.
- (j) 생활비가 더 소요될 수 있는 지리적 요소
- (k) (배우자로부터의 소득과 같은) 간접적인 소득원천으로서, 소득을 창출하는 자와의 관계 이력(history) 또는 상환의무 이행에 관한 해당 소득창출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고려할 경우에, 해당 소득이 그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가용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 및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RG 209.32).

- (a) 필요한 여신의 액수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최대여신금액
- (b) 여신 또는 소비자리스를 필요로 하는 기간
- (c) 여신 또는 소비자리스를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소비자가 얻는 이익
- (d)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특질(features)이나 유연성(flexibility), 그 소비자에 관한 다른 특질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구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가 이들 특질에 연관된 추가적인 비용이나 위험을 모두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e) 여신이나 소비자리스에 관한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 등의 처리사항 및 이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여부

다만 규제지침은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및 여신지원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르므로(RG 209.24), 여신제공자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과 ‘합리적인 확인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RG 209.25). 또한 합리적인 조사와 확인의무에 관한 법 준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공서비스의 성격, 즉 서비스제공자가 여신제공자, 리스업자 또는 여신지원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RG 209.26).

이 경우 상환능력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가 수행되었는지의 확인을 위한 ‘절차’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여신제공자 등이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 관한 증거가 곤란해지게 된다(RG 209.34). 여신제공자 등이 마련하여야 할 ‘적절’한 절차는 (i) 사업모델 및 그가 행하는 여신활동의 유형에 적합한 절차이어야 하며, (ii) 여신제공자등이 이용하는 채널(대면 또는 인터넷)에 따라 책

임있는 대출의무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내용은 조정되어야 할 수 있다(RG 209.38).

예를 들어, 여신을 어느 소비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신신청 및 행동점수시스템(credit application and behavioural scoring systems)」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그 소비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의 측정에 그치지 않고 그 자의 상환능력 역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대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RG 209.37). 즉 여신제공자 등이 사용하는 절차는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G 209.36).

#### 4. 상환능력 평가의 고려요소

소비자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로써 획득한(그리고 확인한) 정보에 기반하여, 여신제공자들은 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부적합하지 않은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에는 그 소비자의 상환능력 평가, 즉 그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 없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갖는지에 관한 평가가 포함된다(RG 209.76).

여신계약이나 여신한도의 증액 등의 경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평가시점에 해당 소비자가 (a) 그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b)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이다(RG 209.77). 이 경우 소비자가 그 상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평가에는, 그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에 기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최대가능금액(수수료를 포함)이 고려된다(RG 209.78).

‘상당한 어려움’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법적 불확실성을 덜고 규제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지침은 어느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가 소비자에

게 상당한 어려움<sup>113)</sup>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RG 209.82).

- (a) 세후 소득으로부터 생활비를 차감한 이후에 남는 잔액으로서 소비자가 갖게 될 금액
- (b) 소비자의 소득 원천
- (c) 소비자의 소득이 얼마나 일관적이며 믿을만한지(그리고 지불할 액수가 소득수준에 상응하는지)
- (d) 소비자의 지출수준이 평균[지출]보다 상당정도 더 높을 가능성
- (e) 소비자의 기타 채무 상환의무 등
- (f) 소비자의 가처분소득과 상환간에 얼마나 완충지대가 있는지(예컨대 소비자들이 이자율 상승이나 ‘특전’이자율 제공기간 종료 후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
- (g) 소비자가 상환의무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규제지침은, 다른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채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다음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RG 209.84).

- (a) 소비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매각하여서만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 또는
- (b) 계약이 소액여신계약이면서
  - (i) 평가시점에 소비자가 다른 소액여신계약에 기한 빚을 지고 있고 그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 (ii) 평가의 90일 이전에, 소비자가 둘 이상의 소액여신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경우이다.

113) ‘상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전국여신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규제지침은 확정문구(definitive formulation)를 제안하지 않는다(RG 209.80).



규제지침은 상환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소득으로부터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소비자는 자산에 관한 순가치(equity)가 아니라 원칙적으로<sup>114)</sup> 소득으로부터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상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RG 209.89). 만일 소비자가 여신계약이나 소비자리스상의 재무적 의무를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매각하여서만 이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소비자는 다른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한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이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법률상 추정되며 해당 여신제공자 등에게 해당 여신계약이 ‘부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sup>115)</sup>(RG 209.90).

그러나 규제지침은 현행 소득 외의 다른 원천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RG 209.92).

<사례>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상환

65세의 남성 소비자는 보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공정기간 대출을 신청하였다. 현재 그는 전일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는 일 년 이내에 은퇴할 의도이다. 그의 재무적 상황은 그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금융중개인이 행한 예비조사에서 그는 그의 퇴직연금이 해당 대출계약상의 상환의무는 물론 그의 지속적인 재무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밝혀졌다.

### 5. 소액여신계약의 특수성

소액여신계약을 통하여 여신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i) 소비자의 소득 중 점점 더 많은 비중의 소득이 빚을 상환하는 데에 사

114)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예컨대 브리짓론이나 역모기지 등)

115) 전국여신법 §118(3), §131(3), §142(3) 및 §156(3).

용되며, (ii)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올리기 위하여 여신을 이용할 능력이 축소됨으로써, 전체 채무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다수의 계약을 소비자가 체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G 209.13).

이와 관련하여 규제지침은 소액여신계약에 관한 ‘상당한 어려움’의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sup>116)</sup> 소액여신계약이라도, (a) 평가시점에 소비자가 다른 소액여신계약상의 채무자이며 그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상환능력 평가의 90일 이전에 둘 이상의 소액여신계약을 통하여 차입한 다중 채무자일 경우에는,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한, 그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한 경우에만 소액여신계약 상의 재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추정된다(RG 209.93).

이 추정의 효과는 (i) 이들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반대사실의 증명책임이 해당 여신피면허자에게 전환되며, (ii) 해당 계약은 반대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며할 것이며 부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iii) 따라서 여신피면허자가 해당 소액여신계약에 관한 여신제공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RG 209.94).

규제지침은 ‘상당한 어려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RG 209.100), 규제지침이 제시하는 아래의 사례들은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시에 그 차입자의 일상적인 생활비용지출을 감안하여야 하며, 리파이낸싱(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에도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며, 일시상환의무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뿐만이 아니라 최종회차의 거액의 원리금상환능력 가부에 관한 상환능력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출관행에서의 상환능력 평가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16) 소액여신계약에 관한 호주 규제지침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리빙서비스 등을 통한 소액 다중채무자에 관한 상환능력 평가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가족에 대한 지출비용

여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될 때에, 여신피면허자는 그 소비자의 생활비용을 충족할 현실적인 가족생활비용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여신계약상 진행되는 상환액(그리고 기타 다른 상환액 및 정기적인 재무적 지출약정을 포함)을 차감한 이후 소득으로부터 이들 생활비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사례> 리파이낸싱

소비자가 어느 여신계약상 기존의 재무적 의무를 현재 준수할 수 없는 경우(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만 준수할 수 있는 경우), 여신피면허자는 상당한 어려움 없이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여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소비자의 채무를 리파이낸싱해줄 수 있다.

<사례> 일시상환(balloon repayments)

대출기간 종료시점에 ‘일시(balloon)’에 다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그 여신계약상의 정기적인 상환의무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은 소비자가 최종적인 거액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 IV. 소 결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책임 있는 대출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미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은 그 규모나 종류와 무관하게 신용평가에 의한 정상적 신용공여를 하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대출로 부실화된 채권을 강박적 채

권추심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sup>117)</sup> 이러한 경향은 고금리 대출 일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 1. 대출의 적정성 판단 관련 현행법령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체결시에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일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제1항). 이처럼 금융회사 등이 변제능력 심사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즉 과잉대출의 금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은 파악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는 그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나(법 제7조제2항),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과잉대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은행법」은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금융거래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금리, 계약해지권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광고에 있어서 규제는 이자율·부수혜택·산정방법 등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sup>118)</sup>

이 법을 통해서는 연이율에 대한 규제나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고, 과잉대출이 이루어지고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차입자가 주요 계약정보(수수료, 이자, 만기, 중도상환수수료 등)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불공정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17) 홍종학, 앞의 논문, 248면.

118) 김효연, 앞의 자료집, 66면.

그 밖에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원칙)<sup>119)</su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결제능력심사기준 등을 두고 있다.<sup>120)</sup>

## 2. 대출의 적정성 판단 관련 개정안

현행법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487) 역시 현행 「대부업법」보다 적용대상을 넓혀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미리 금융이용자로부터 일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금융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법(안) 제6조). 다만 현행 「대부업법」보다 한발 나아가 동법(안)은 어느 경우에 과잉대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법(안) 제6조 제2항). 동 요건은 누적적 요건으로, 이를 모두 만족시킬 경우 과잉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제능력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법(안) 제6조제2항).

---

119) (1)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등

120) 「여전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대출업무 운용 원칙)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 실행 이후 용도의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에서는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소득·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안) 제5조제2항은 과잉대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수에 비하여 너무 적은수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안번호: 4023)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을 구매권유할 경우,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구매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법(안) 제19조제3항), 내용적으로 현행 「대부업법」이나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과잉대출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안)은 무엇이 과잉대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현행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하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의하든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차입자에게 부적합한 대출인가에 관한 판단기준의 마련 및 제시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다.

## 제 7 장 결 론

약탈적 대출은 차입자의 교섭력의 결여라는 지위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사용한 것에서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sup>121)</sup>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의 적용, 대출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잉대출의 위험이 전가되는 현상이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전가로 인하여 차입자는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융시스템에게로 위험을 전이시킬 우려가 있다.

앞에서 약탈적 대출과 관련하여 앞에서 EU, 영국,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입법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약체결 전 차입자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해당 금융이용자가 이용하려고 하는 상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재정상황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라는 것, 금융이용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상환가능 한 범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대출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대부업법」 등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신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법안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우리법제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을 통해서 전체 금융소비자의 대출 적정성에 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개별업법에서 각 해당 업권의 여신제공자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규율강도의 형평에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

---

121) 최승재, 앞의 논문, 192면.

또한, EU, 영국에서 APR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연리, 수수료 등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용 판단이나 대출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건전 대출거래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도 금리의 적정화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연 39%, 「이자제한법」에서 연 30%로 정해지고 있지만 신용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122)</sup>

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상환능력 판단에 관한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신 등을 제공한 여신업자 등에 대하여는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판단에 관한 상세 지침이 적절하게 제시된다면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의무를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여신업자 등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민사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며 이는 다시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려고 할 지 대한 유인을 여신업자 등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

122) 일본의 경우 이자제한법 20%, 「대부업법」 20%~15%에서 금액에 따라 3단계 차등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회 정무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3. 2.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9.
- 김효연, “우리나라 약탈적 대출에 관한 법적문제와 대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5.
- 김희철, “EU의 대출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5.
- 박창균,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주택금융월보 통권 제75호, 2010.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 4.
- 이기종,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 전광백,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최승재, “구조화 금융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전개에 대한 연구 : 약탈적 대출행위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상장협연구, 2008. 10.
- 심영, “대출자책임-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 2003.
- 홍종학, 약탈적 대출에 대한 소고,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5, 봄.
- <http://mbceconomy.com/detail.php?number=3689&thread=26r06>(2013.3.10. 보도자료)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2012. 10. 4. 보도자료

FNTIMES 뉴스, “금융당국, 과도한 대출모집인 수수료 철폐,” (2012. 10.18) 출처: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20714>

EUROPEAN COMMISSION, HEALTH &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GENERAL, Discussion paper for the amendment of Directive 87/102/EEC concerning consumer credit, 출처 : [http://ec.europa.eu/consumers/cons\\_int/fina\\_serv/cons\\_directive/cons\\_cred1a\\_en.pdf](http://ec.europa.eu/consumers/cons_int/fina_serv/cons_directive/cons_cred1a_en.pdf)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8/48/EC (Consumer Credit Directive) in relation to costs and the 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2012. 8. 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8/48/EC(Consumer Credit Directive) in relation to costs and the Annual Percentage Rate of charge, 2012. 8. 5

Express(internet news), “Irresponsible lenders facing more criticism,” June 2, 2013. <http://www.express.co.uk/finance/personalfinance/404354/Irresponsible-lenders-facing-more-criticism>

Consumer Credit Act 1974,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4/39/contents>

Consumer Credit (Total Charge for Credit) (Amendment) Regulations 2012 (2012 No. 1745),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2/1745/made>

Office of Fair Trading, ‘Irresponsible lending- OFT guidance for creditors’  
OFT 1107, (March 2010, updated Feb. 2011)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xi/1999/2083/made/data.pdf>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출처: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nccpa2009377/index.html#sch1](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nccpa2009377/index.html#sch1)

Consumer Credit Legislation Amendment (Enhancements) Act 2012, 출처: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A00130/Download>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Regulation 2012 (No. 4), 출처: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2L02429/Download>

Regulatory Guide 209; Credit Licensing: Responsible lending conduct (Feb. 2013), 출처: [http://www.asic.gov.au/asic/pdf/lib.nsf/LookupByFileName/rg209-published-25-February-2013.pdf/\\$file/rg209-published-25-February-2013.pdf](http://www.asic.gov.au/asic/pdf/lib.nsf/LookupByFileName/rg209-published-25-February-2013.pdf/$file/rg209-published-25-February-2013.pdf)

Crime Act 1914 출처: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1482/](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1482/)

<http://likms.assembly.go.kr/>

World Today (broadcasting reporter: Simon Santow), “Banks under fire for irresponsible lending,” (12:10pm on ABC Local Radio), 출처: <http://www.abc.net.au/worldtoday/content/2008/s2449226.htm>.

Express (internet news), “Irresponsible lenders facing more criticism,” (June 2, 2013), 출처: <http://www.express.co.uk/finance/personalfinance/404354/Irresponsible-lenders-facing-more-criticism>.

The Dominion Post (internet news), “Failure to cap interest rates undermines law,” (June 6, 2012), 출처: <http://www.stuff.co.nz/>

참 고 문 헌

[dominion-post/comment/7046419/Failure-to-cap-interest-rates-under-mines-law](#)

OECD,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aris, 2011.